

韓國과UN과의關係再設定方案



이 보고서는 국토통일원 73년도 상반기
학술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1973년 . 7월 . 일

연구기관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자 : 김 정 건

目 次

第 1 章 最近 國際政治의 分析	1
1. 序 論	3
2. 美蘇關係	7
3. 美中共關係	12
4. 美日關係	15
第 2 章 「유엔」憲章과 非會員國問題	19
1. 非會員國 問題와 韓國問題	21
2. 「유엔」憲章과 韓國問題	30
第 3 章 「유엔」과 韓國	41
1. 「유엔」 變化理由	43
2. 韓國對 「유엔」關係	50
3. 北韓의 「유엔」政策	55
第 4 章 「유엔」과 北韓	59
1. 北韓 同時招請問題에 關한 反對의 根拠와 同時招請의 長短点	61
2. 北韓의 「유엔」參與와 그에 對한 予備對策	69

第 5 章 同時招請問題와 北韓의 「유엔」代表府 設置問題	81
1. 同時招請, 以後의 予想되는 北韓의 活動과 그에 對한 對備策	83
2. 北韓의 「유엔」代表府 設置問題	91

才 1 章 最近 國際政治의 分析

1. 序 論

2. 美 蘇 關 係

3. 美 中 共 關 係

4. 美 日 關 係

1. 序 論

一般的으로 韓半島에 있어서의 國題政治 狀況에 對해 研究를 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假說 및 條件이 成立한다.

첫째 美蘇 및 美中共關係의 緊張緩和는 그 어느때보다도 分明하지만 東西의 敵對關係는 武力衝突의 事態까지 격화되지는 않을지라도 어느 단계까지는 持續될 것이라는 點

둘째 東西 兩陣營사이에서 「이데오르기」 및 政治的 根本問題의 基本的인 合意가 있을 可能性은 희박하더라도 이 兩陣營사이의 解決은 그 傾向과 深度가 當分間 持續될 것이라는 點

셋째 西方이나 東方側이 外面적으로 무엇을 表明하든지間에 그들이 「影響力」과 「勢力權」에 對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리라는 點

넷째 現在의 國際政治는 時時刻刻으로 重大한 變遷이 進行되고 있으며 이에 隨伴되어 過度期的 不安이 韓國과 같은 나라에게는 모험과 도전이 된다는 點

다섯째 가까운 將來에 勢力의 中心은 美蘇日이 될 것이며 中共이나 英獨仏等の 歐洲共同市場 諸國은 그다음으로 勢力權을 形成하게 될 것이라는 點

이와같은 假設의 成立은 從來의 世界를 再調整하는 것이 되며 傳統的인 自由陣營과 共產陣營의 對決에서 새로운 國際關係로 나아

가는 것이 된다.

第二次世界大戰 以後의 世界를 우리는 흔히 1) 美國의 独占時代 2) 美蘇를 中心으로 하는 兩極體制 或은 冷戰時代 3) 多極的體制의 三段階로 区分지을수 있다. 이 三段階를 簡略히 說明하면 美國에 依한 힘의 独占時期는 大體로 1945-1948로서 美國이 原子彈을 独占하였던 時期를 말한다. 이 期間은 그야말로 美國에 依한 完全 独占의 時代이며 世界의 어느 나라도 敢히 美國에 挑戰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時代로 蘇聯이 原子力을 所有하게 됨으로써 끝나고 이 以後의 時代는 美·蘇에 依한 兩極時代가 始作된 것이었다.

1948年 以來로 蘇聯은 世界에 對해 그 거만성을 誇示하고 美國에 對해 挑戰하기 始作하였다. 이와 더불어 같이하여 東西의 兩陣營은 서서히 對決의 樣狀이 漸高되어가기 始作하였다. 1948年 伯林封鎖에 이어 1949年의 印度支那問題 그리고 1950年의 韓國 動亂이 이 東西對決의 現狀인 것이다. 이 時期를 表現하는 말로서 “冷戰”이란 用語는 現在까지 使用되는 바와 같이 兩陣營사이의 對立關係를 表示하는 一般的 用語였다.

西方側은 共產側을 孤立시키고 共產側이 「이베오르기」와 政治사이의 矛盾點을 包含하여 數 많은 矛盾으로 因하여 滅亡하기를 期待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封鎖政策이란 이름으로 나타난 것이다.

보통 이 時代는 共產世界속에서의 勢力다툼 즉 中蘇紛爭이 實際化된 1957~1960年까지 持續되었다고 간주할 수가 있다.

多極化 時代는 1960年 以後의 時期를 일컫으며 이 時期의 重

要性은 從前의 全世界의 運命을 좌우하던 두 強大國에 對抗하는 勢力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傳統的 意味의 強大國은 領土와 軍隊의 規模로서 決定되었으나 現代는 무엇보다 核能力의 如何가 人口, 軍隊의 大少를 능가하는 要素로 등장한 것이다. 그러므로 日本이나 「이스라엘」, 英國, 獨逸과 같은 작은 나라들도 強大國내지는 準強大國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根源이 核能力의 保有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現代的 힘의 根源은 核武器로써 敵國에게 얼마나 큰 致命的 打撃을 加할 수 있는 가 技術的 科學的 能力인 것이다.

上記 事項에서 나타나는 重要한 事實은 韓國과 같은 나라가 分斷된 狀態에서 外勢에만 依存하고 있는 동안 國際政治에서는 많은 變化들이 進行되고 있다는 事實이다. 國際政治에 있어서 이같은 變化의 速度, 強度 및 方向은 韓國에 決定的 影響을 주며 韓國은 이를 正確히 分析하고 이에 대처해야할 責任이 있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1970年 以來의 時期는 國際情治에 있어서 가장 劇的인 事件들이 發生하였으니 그것은 즉 國際社會의 再編成 및 再調整이었다. 이 時代는 東西의 開放的 對立에서 協商과 妥協의 時期로의 轉換되는 時期이다.

이 時期의 主目할만한 特徵은 「닉슨」美大統領이 北京을 訪問함으로써 中共을 外交的으로 承認한 것과 美國과 蘇聯이 經濟協助 및 戰略武器制限會談에서 重大한 進前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美國과 同盟國들과의 關係에 있어서도 그 어떤 重大한 變化가 있었으

며 現在도 進行되고 있는 것이다.

보통 西方側 同盟國들 말하자면 美國을 中心으로 하는 同盟體制는 集團的 軍事力으로 共產勢力을 牽制해왔으나 이 役割은 이제 끝나고 소위 「닉슨」이 말하는 “安定된 平和”를 위한 微權으로써 侵略에 대한 상정적 보복의 구실도 제대로 지니지 못할 것이다.

現在 國際社會에서 同盟의 意義가 어떻게 간에 軍事의 性格은 점차로 감소되고 政治的 經濟的 性格이 증가할 것만은 틀림없는 事實이다. 이런 意味에서 美國은 英國이 歐洲共同市場 加入을 爲하여 歷史的 傳統的 紐帶를 拋棄하였으며 西獨 및 蘇聯과 正常化 計劃을 支援하였던 것은 똑같은 性格을 띠고 있는 것이다. 또한 美國은 美國自身과 極東 및 東南亞의 安保의 必要性이 明白함에도 不拘하고 沖繩(오키나와)를 返還하게 된 것이다.

經濟的인 面에서도 美國은 同盟國사이에 相反되는 利害關係를 輕減시킬 의도하에 1971.12月에 貨幣의 全般的 再調整에 나섰던 것이다.

大体로 이 時期에 있어서 美國이 失敗한 것이 있었다면 共產主義 에게는 共產國家들을 牽制 或은 沮止하지 못한 것이며 이것은 美國이 越南에서 戰爭을 完全勝利로 이끌지 못하고 단지 武力的 對立의 強度를 輕化시킨데 不過하다.

現 國際政治, 特히 東南亞政治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美蘇, 美中共, 美日의 關係이며 이것은 곧 韓國에게도 重要한 外的 環境이 되는 것이다.

2. 美·蘇關係

一般的으로 美·蘇間에는 根本적인 差異점이 있으며 이들에 對해 分析해 봄이 重要할 것이며 그들은 다음과 같다.

1) 「이데오르기」의 反目

共產主義 「이데오르기」는 共產國家들이 이것을 가지고 戰爭을 遂行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데오르기」가 戰爭을 正當化시키기 때문에 이 「이데오르기」를 分析하는 것이 共產主義者의 行態分析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이데오르기」는 그들이 「科學的 絶對確實性」과 獨善을 宣傳하는 도구로 使用되어 왔으며 資本主義世界와의 對立을 認定하고 支援하며 鬭爭을 遂行하기 위한 基本的 法令이 되어왔던 것이다.

美蘇關係의 이같은 特殊한 狀況에 있어서 社會主義와 共產主義와의 衝突의 不可避性은 妥協이나 共存을 傳統的으로 否認하는 것이 되었다. 現在 全世界的인 「平和」에 對한 氣流에도 不拘하고 이에 對한 不安은 兩國家사이의 歷史的 相異점이 根源이 되어왔다. 여기서 가장 重要的 것은 「이데오르기」란 過去와 現在와 未來에 있어서 行爲의 標準이 아니라 行爲의 正當化를 爲한 手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理解하여야 한다는 點이다. 卽 國家의 利益에서 나오는 行爲는 「이데오르기」의 指示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에 우선되는 것이다. 「이데오르기」는 언제나 이미 行해진 行爲를 正當化시키기 爲해서 使用되어 진다.

2) 軍事的 政治的 競争

冷戰이 始作된 以來로 美國과 蘇聯은 비록 兩者가 正面에서 衝突하지는 안었다 하지만 보다큰 勢力다툼이나 軍事的 準備를 爲한 競争은 계속되어 왔던 것이다. 實로 「스칸디나비아」半島에서 地中海에, 地中海에서 印度洋과 베링海峽에 이르는 兩軍事同盟體制는 바로 軍事的 힘과 政治的 勢力的 競争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牽制와 冷戰政策의 必要에 依해 各者는 正當化의 妥當性을 爲하여 주어진 手段으로 보다큰 勢力다툼을 벌여왔던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第二次世界大戰 以後의 戰鬪의 背後에 있는 實際的인 動機들을 理解할 수가 있는 것이다.

實로 共存이라는 原則이 軍事的 政治的 競争의 可能性이 없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軍事的 對立을 順理的으로 解決할 수 있을 뿐 共存은 競争의 前提下에서 成立하는 것이다.

3) 地域的 指導者로서의 公約

第二次世界大戰 以後로 世界는 政治的 軍事的으로 分斷되었고 美蘇는 各者의 勢力圈內에서 指導的 役割을 遂行해왔다.

이 兩國사이에는 緊張을 緩和시키려는 여러가지 努力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적어도 軍事的 面에서의 支配力을 조금도 피해받지 안으려고 相對를 警戒해온 것이다.

中蘇間의 不和, 美國의 古巴損失, 中東諸國에 있어서 두 強大國의 變動되는 特殊한 事件들을 除外하고는 제각기 勢力圈의 構築에 安定된 狀態를 維持하여 왔다.

萬一 西方側內에 그 어떤 變化 즉 「NATO」 및 其他 同盟體制과 地域的 組織體가 變化된 것을 例로 든다면 蘇聯側에도 變化 즉 「바르샤바」條約 및 內部的 安全性的 弱化라는 變化가 있었다고 볼 수있다.

따라서 美國과 蘇聯은 各者의 影響力이나 指導者的 地位를 多少라도 喪失하지 안을가 하는 念慮下에서 相互協助의 雙方條約 및 多邊條約을 通하여 그들의 現狀維持를 約束하였던 것이다. 이 두 強大國間의 現實的이며 基本的인 和解를 予測하지 않고서는 地域的 指導者로서의 役割에 對한 그들의 公約이 政策을 設定하는데 있어서 더 이상 重要的 比重을 차지하지 안을것 같음으로 아마도 두 巨人國間의 衝突이나 競爭은 世界平和를 沮害시키는 것이 될것이다

4) 核 競爭

現代 國際政治에 있어서 國力の 基本的 要素는 무엇보다도 「核能力」이 된다. 그러므로 美國과 蘇聯이 相互間의 信賴가 不足하고 따라서 安保란 名目下에 核武器의 改良과 秘藏에 熱中하고 있는 限 美蘇의 核能力은 不可避한 것이다. 이러한 美蘇의 核競爭下에서는 美蘇關係는 如前히 疑心과 警戒 그리고 競爭의 연속만이 있을 뿐이다.

5) 美蘇 兩 國民의 계속된 敵對意識

美國과 蘇聯國民 사이에는 四半餘世紀 동안이나 누적되어온 敵對意識속에 살아왔다. 이 不信과 敵對感情이 하루아침에 解消되리라 期待하는 것은 可能하지 안으며 적어도 兩政府가 이런 風土의 改善을 爲해 끊임없는 努力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例들이 美蘇關係를 沮害하는 要因들이며 이들 要因들은 兩國이 보다 誠實性있게 關係를 맺으려는 努力들과 並行시켜 研究되어져야 하며 그가운데 重要的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核交換의 回避

한 國家의 가장 重要的 問題는 “生存”이며 이것은 獨立國家로서 存在를 保障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美國과 蘇聯에게도 生存보다 더 重大한 命題는 없을 것이며 이러한 意味에서 美蘇는 全面的 核交換에서는 주저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核交換은 곧 自滅을 意味하기 때문이다. 美蘇가 서로 核交換의 可能線까지만 相互關係의 軟化를 許諾할 것은 自명한 일이다. 이런 意味에서 核交換을 回避한다는 前提下에서 美蘇關係가 考慮될 것이다.

2) 軍備縮少

核交換을 回避하고자 하는 相互間의 憂慮와 더불어 軍備縮小도 큰 問題가 되는데 이것은 他國의 國防予算을 正確하게 測定할 수없기 때문에 兩國은 實로 莫大한 軍事費를 支出하고 있는 것이다. 相互 過重한 軍費를 輕減시키려는 試圖는 兩國關係의 改善을 促進시키는 것이 된다.

3) 增大된 貿易

上記 事項들과 더불어 貿易擴大는 美蘇 關係改善의 重要性을 力說시키고 있다. 冷戰으로 東西가 分斷되었을 時代에는 兩陣營사이의 貿易이 거의 施行되고 있지 않았으나 점차로 兩陣營사이의 貿易의 重要性이 增大되자 이것이 美蘇의 改善을 자극하는 要素가 되었다.

4) 創造的 經濟, 社會, 技術 및 科學的 交換의 必要性

世界는 이제 鎖國的 내지 封鎖的 政策이 퇴색하고 어느 國家도 孤立과 自足의 環境속에서 平和와 安全을 누릴 수는 없게 되었다. 世界平和의 展望이 自國의 安寧을 爲한 前提條件으로서 되어져야 할 것이라면 美蘇兩國의 經濟 및 社會, 技術의 交換은 보다 深化된 理解의 前提條件이 될 것이며 이것이 將來의 平和와 生存의 條件이 되는 것이다.

3. 美·中共關係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가장 주목할만한 事件은 美·中共의 새로운 關係와 이에 結付된 韓國問題이다.

從來 美國은 中共을 國際社會에서 封鎖로 一貫해 왔었지만 1969年 「닉슨 닥트린」이 始作되면서 “砲彈代身 對話”로 相對하는 것이 보다 有益하다는 信念下에 이때까지의 對中共 敵對關係를 變更한 것으로 보여진다.

美國이 對中共 關係改善을 始作한 內面的 動機들을 分析하면 大略 다음과 같다.

첫째 中共은 現在 完全한 核能力을 保有하지 못했지만 1970年代 後半期에는 그 能力을 完全히 갖추게 될 것으로 予想되어 時期的으로 보아서 1970年代 初期가 中共과의 解決에 適合하다고 判斷된다는 點

둘째 中蘇가 좀처럼 타협할 줄 모르는 紛爭의 熱度를 더해 가므로 因해서 이 사이에 美國이 들어갈 틈이 생겼다는 점

셋째 美國은 지금까지 封鎖政策으로 中共을 封鎖하려 하였으나 失敗하였고 오히려 國際政治의 傾向이 美國의 政策에 相反되는 方向으로 흐르고 있다는 點

넷째 中共은 獨裁政治를 하고 있지만 國內政治가 比較的 安定되어 있으며 經濟成長도刮目할 만큼 이루어지고 있다는 點

다섯째 美國內에서 中共을 承認하고 正常化하려는 움직임이 繼續되어 왔으며 또한 이것이 美國의 國利에 尙當하다고 美國인들이 대

대다수가 믿고 있다는 點

여섯째 美國을 爲始한 世界가 四半世紀동안이나 中共을 따돌렸다는데 대한 心理的 및 道義的 등정심이 씩트고 있다는 點 이 事實 이 美國 自身の 行爲에 어떤 罪責感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곱째 美國의 態度에 關係없이 中共은 強大國이 될 것이라는 事實을 美國 國內에서 是認하고 있으며 이때문에 可能한 限 빨리 中共을 적어도 極東에서의 強大國으로 認定해야 된다는 必然性 여덟째 萬一 美國이 中共과의 敵對關係를 固執한다면 原料 供給地로서 그리고 市場으로서의 中共을 다른 나라 特別히 日本에게 先 占當하게 될 것이라는 點

아홉째 亞細亞의 平和는 中共의 發言을 無視하고는 成立하지 안으리 라는 點

1971年7月 美上院에서 所謂 *台灣案*의 廢棄를 爲始하여 美國 會에서 台灣 및 澎湖列島가 武力侵略을 받을時 美軍을 투입하여 防禦하지 안을 것이라는 點을 明示하였다.

이와같은 上院의 決意가 나타내는 바에 依하면 美國은 中共으로부터 台灣을 保護할 責任과 義務를 拋棄한 것으로 看做된다.

「닉슨」美大統領의 中共訪問(1972年2月21日~28日)은 이런 움직임 後에 일어난 것이다. 「닉슨」의 中共訪問은 美國이 中共을 外交的으로 承認하고 또한 逆으로 中共이 美國을 承認한 것으로 나타났다.

닉슨이 中共을 訪問한 最終日에 나타난 共同聲明에는 美國의 台灣 防禦에 對한 終來의 公約은 찾아 볼 수 없었으며 이것은 台灣에

뿐만 傳統的 單邊的 政策을 變更시킨 것이라고 봐야 될 것이다.

美國의 視點은 蔣介石總統이 죽고나면 台灣의 地位는 中共과의 새로운 關係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과 台灣問題를 長期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現在 美國은 中共의 軍事的 能力을 다음과 같이 推算하고 있다.

첫째 中共의 大陸間彈道誘導彈은 1975年度에는 10個내지 20개를 保有하게 될것

둘째 中共은 現在 大陸間 重暴彈 및 原子力 彈道潛水艦을 所有하지 못하고 있음

셋째 中共의 現在 소유하고 있는 몇개의 MRBM 및 IRBM은 極東 및 東南亞과 蘇聯의 重要地域은 攻擊할 수 있으나 아직 美大陸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

넷째 2百50萬의 中共軍이 비록 現代化는 되었다고 하나 1970年度 初期에 비해 別差異가 없으며 地上軍은 美國에 대해 隣接 國家와 같은 直接的 威脅은 되지 못한다는 것

現在 美中共 關係로써 判斷된 이와같은 最終的 分析으로서 中共이 美國의 國家利益을 決定的으로 損傷시키지 않는한 美國은 좀처럼 中共과의 戰爭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4. 美·日關係

最近의 美日關係는 다음 몇 가지로 特徵지워 진다.

첫째 多方面에 걸쳐 美國에 對한 日本의 感情이 惡化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表面上의 것이며 實質的인 面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

둘째 오기나와의 返還은 日本人들로 부터 환영을 받았으며

셋째 美日間의 相互通商은 서로 有利한 狀態로 進전되어 왔으며

넷째 日本은 美國의 亞細亞 防衛政策에 있어 重大한 役割을 한다는 點

다섯째 日本은 世界第二次大戰 以後로 極東에서 美國이 政治, 經濟 社会的으로 成功한 좋은 標本이 되며

이와같이 美日關係가 肯定的인 面이 있는 反面에 否定的인 要素를 分析하면, 즉 美日關係를 沮害시키는 要素는,

첫째 日本의 經濟保設政策 즉 換率統制 輸入制限, 關稅, 外貨投資抑制 등 때문에 美日關係는 經濟的으로 對決의 狀態로 들어가기 始作했다는 點

둘째 防衛費用의 分担問題 即 日本側이 美國側의 요구인, 防衛費用의 分担을 꺼려 함으로 美日關係는 점차 예민해 지기 始作하였다는 점

셋째 美國도 日本과 같이 第三國과의 經濟的 面에서의 敵手로 생각한다는 點

여기서 日本의 經濟를 잠시 살펴보면 日本은 現在 140億弗을

超過하는 外貨를 保有하고 있으며 GNP成長率은 平均 11%에 達하는 主要 工業國이며 1975年에는 日本의 GNP가 四千億弗程度가 될 것으로 予想되어 이러한 經濟力은 政治的으로도 軍事적으로도 美國에 對해 심한 우려가 될 것이다.

이제 美·日의 經濟的 競爭은 不可避하며 政治的으로 中共은 亞細亞에 對한 日本의 經濟侵略을 重要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 理由는 中共이 自身을 亞細亞의 最強國으로 자처해 왔기 때문이다.

日本의 對中共, 對蘇 貿易은 美國과의 競爭이 不可避하지만 最近 몇가지 要素는 美日間の 이갈이 高調된 競爭意識을 더욱 자극하여 惡感情에 이끄는 요소가 된다. 즉 1) 沖繩의 返還 2) 日本의 經濟成長 및 美日間の 貿易 不均衡 3) 亞細亞 開發에 있어서 美日의 不均等한 寄與 4) 美日防衛關係 5) 中共과의 關係등의 그것이며 經濟問題는 차치하고라도 日本의 再武裝에 對해서는 簡略한 分析이 있어야 할 것이다.

大體로 美國은 沖繩의 返還을 出發點으로 하여 緩慢하나 確실히 日本과의 同等性 및 互惠主義에로 움직이고 있다.

日本의 防衛積藏力의 可能性이 增大하는데에 對한 美國의 憂慮는 內延的으로 二重性을 띤 것이다. 即 美國은 한편으로는 더 많은 日本의 방위부담을 원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日本의 防衛費用이 過大해지는 것을 願치 않고 있다.

그 理由는 美國이 日本의 完全 再武裝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例를 들어 1975年度에 予想되는 日本의 GNP 四千億弗中

10~15%를 國防費에 支出한다고 가정 할때 美國의 憂慮는 納得이 가는 것이다. 萬一 日本이 다른 나라와 다찬가지로 똑같은 比率의 國防費를 支出한다고 가정하면 日本의 軍力量은 過小評價할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日本에 對한 美國의 「딜레마」는 日本이 國際社會에 威脅을 주지 않는 限度內에서 再武裝할 것을 願하는 것이다. 日本이 일단 再武裝을 始作하기만 하면 美國이 日本의 再武裝의 擴張 및 速度를 統制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대단히 의심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現在 日本의 再武裝에 對한 美國의 우려는 特히 韓國과 같은 地域的 隣接國을 위해서도 면밀히 檢討해야 할 것이다.



才2章 「유엔」憲章과 非會員国問題

1. 非會員国 問題와 韓國問題

2. 「유엔」憲章과 韓國問題

1. The first part of the documen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of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2. The second part of the documen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of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3. The third part of the documen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of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1. 非會員國問題와 韓國問題

國際機構가 非會員의 問題에 對해서도 管轄權을 所有한다는 주장의 妥當性에 對해서는 많은 論爭이 오랫동안 있어 왔다.

이의 妥當性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들 主張의 根拠를 「機能上 必要性」 說에 두고 있는것 같다. 이說에 依하면 國際平和와 安全이라는 基本領域에 있어서 만이라도 國際機構가 非會員國들에게 憲章의 基本原則을 遵守하고 이 原則에 따라 行動을 自制하도록 命할 수 있는 根限을 갖지 않는다면 그 機構는 基礎를 喪失하여 無意味하게 된다고 主張하고 있다. 따라서 國際社會의 共同利益과 平和 및 安全이라는 命題는 非會員國일지라도 유엔憲章을 遵守할 것을 要求한다.

이에 關한 유엔憲章 第2條 6項은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즉 유엔은 國際平和와 安全을 維持하는데 必要한 限, 非會員國들이 이들 原則에 따라 行動하게 하여야 한다.

反面, 非會員國들에 對해 유엔이 管轄權을 가질 수 없다고 妥當性을 否認하는 사람들은 傳統的 國際法規範 特히 條約規制法을 嚴格하게 따르는 傾向이 있다. 이들에 依하면 유엔 憲章이 本質的으로 그 署名國 및 加入國에 限해서만 適用되는 多邊的 條約으로 보고 있으며 一方的으로 무어라고 주장하던지 非署名國이나 非會員國을 拘束시킬 수는 없다고 하며 다음에서와 같이 國家의 主權에 기반을 둔 國際法의 基本原則에 違反되는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이에 關聯하여 國際法이란 傳統的이건 現代的이건 그 規範에 署

名한 國家의 數와 署名國의 遵守에 依해서 가장 큰 効力을 갖게 되며 따라서, 國際法의 가장 妥當한 法源中의 하나는 條約, 特別히 多邊的인 「立法的」條約이라는 것을 銘心해야 한다.

유엔憲章은 眞實로 이러한 條約이며 따라서 그 妥當性論이 다른 모든 反對主張보다 優先한다는 데는 疑問의 余地가 없을 것 같다. 實際 問題에 있어 오늘날 圧倒的 多數國家의 集團的 同意를 代表하는 유엔憲章이 妥當한 法規範으로 認定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이 妥當한 法規範이 될 것이고 또 될 수 있을 것인지 자못 疑心스러우며 유엔憲章과 相馳되는 規範에 根拠를 두는 主張은 어떤 것이든 容納될 수 없다.

이런 意味에서 韓國에서의 유엔의 役割을 둘러싼 論爭은 特定狀況에 關한 問題라기 보다는 國際法에 關한 問題이며 國際法을 遵守하지 않고 이를 拒否 또는 無視했느냐의 問題이다. 이 點에 關聯하여 유엔이나 國際社會가 政治的인 理由로 制裁措置를 加하지 못한다는 것이 妥當한 規範이나 法的制限이 없음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國際法의 妥當성과 이를 無視하는 것과는 明白히 區別되어야 한다.

돌이켜 보면 유엔이 非會員國들에 對해 管轄權을 主張하였던 先例가 없는 것도 아니다. 國際聯盟(The League of Nations) 規約 第17條가 바로 이 例이다.

이 條文과 比較할 때 유엔憲章 第2條6項은 非會員國들에 對한 管轄權 主張은 훨씬 더 強力하게 規定하고 있는데 이 條項은

유엔은 특히 國際平和와 安全의 領域에 있어서 모든 유엔 非會員 國들이 유엔憲章의 規範에 따라서 行動하게 할 것이라는 文句를 使用하고 있다.

유엔憲章은 적어도 國際平和와 安全의 領域에 있어서는 어떠한 非會員國도 유엔의 權威를 無視하거나 이에 挑戰할 수 없음을 含蓄性있게 暗示하고 있다.

이밖에 유엔憲章은 國際聯盟規約 第 17 條 (2 - 4 項) 와 같이 明文으로 細部事項을 規定하고 있지는 않지만 安全保障理事會가 유엔 非會員國들이 介入되어 있거나 非會員國間에서 벌어지는 特定紛爭이 「平和에 對한 威脅, 平和의 파괴 또는 侵略行爲」라고 規定 (유엔 憲章 第 38 條에 依拠) 되는 경우 安保理가 非會員國에 對해 制裁措 置를 取할 수 있다는 것은 別로 問題될 것이 없다고 假定해 봄 도 無理가 없는것 같다.

두 機構間의 差異를 考察해 보자.

國際聯盟規約은 非會員國들에게 그들間에 일어난 紛爭의 解決을 安 保理에 付託할 特典을 주지 않았던 것 같으나, 유엔憲章은 이러한 特典을 非會員國들에게 許容하고 있다. (第 35 條 2 項)

또 國際聯盟規約에서는 非會員國들에 依한 國際聯盟規範의 無視 가 可能하다.

例컨데 國際聯盟規約 第 17 條의 規定에 依하면 國際紛爭의 当事者 인 非會員國이 國際聯盟의 招請을 受諾하고 「委員會가 賦課하는 條 件」에 따를 것에 同意하는 경우 그 非會員國은 聯盟機構를 利用

할 수 있으나 当該 非會員國이 條件受諾을 拒否하거나 招請에 応하지 않기로 決定하는 경우에는 聯盟은 아마도 거의 束手無策이었을 것이다. 유엔憲章 第35條 2項으로부터 이와같은 類推解釋을 내릴 수 있다 하더라도 유엔憲章上의 制度는 第2條 6項 및 第32條에 依해 이와 큰 差異를 보이고 있다. 유엔 憲章上의 이 部分에 對해서는 (國際平和와 安全에 關係되는 問題에 있어서) 유엔이 非會員國에 對해 管轄權을 行使하는 것은 当該 非會員國들의 同意有無에 不拘하고 委任된 것이라고 解釋하는 것이 通說인것 같다.

이밖에 두 機構의 文書는 모두 그 機構의 會員이 아닌 「國家(들)」라고 表現하고 있으나 유엔憲章은 伸縮性을 許容하고 있다. 즉 安保理 臨時議事進行 規則 第3條는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즉 安保理는 그 權能範圍內의 問題를 討議함에 있어, 情報를 提供받거나 其他의 도움을 얻기 爲해 이러한 目的에 適合하다고 생각하는 事務局職員이나 其他人을 招請할 수 있다.

安保理는 그의 招請이 暗黙的인 (「國家」)承認으로 推論되는 것을 防止하기 爲해 여러 경우에 이 規則 第39條를 活用해 왔다. 韓國動亂中에 中共을 招請한 것은 이 規則에 따른 것이었다.

上述한 바에서 보면 유엔은 交戰當事者의 유엔會員國地位 有無에 不拘하고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에 「現實的」또는 「潛在的」威脅을 주는 모든 事件을 다룰 수 있고 따라서 이에 管轄權을 行使할 수 있는 權限이 賦與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韓國의 경우는 明白히 「유엔」의 管轄權 範圍內에 있으며 유엔은 實際로 韓國에서 侵略行

為가 일어나고 있다고 宣言하고 強制行動을 取했다.

여기에 關聯해서 大韓民國이 韓國戰에 關聯해서만이 아니라 獨立國으로 탄생한 때로부터 유엔機構의 關係決議案과 要求를 始終一貫 遵守해 왔다는 事實을 考察하는 것은 대단히 重要的 事이다.

反대로 北韓은 이점에 있어서 公公然히 유엔을 無視내지는 拒否해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北韓이 유엔憲章上의 一般原則들을 違反하므로써 國際法을 違反해 왔을 뿐만 아니라 유엔憲章 第2條6項 및 第32條를 違反해왔다는 事實은 分明하게 認識되어야 한다.

다음은 유엔이 韓國戰에서의 交戰当事者라는 問題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유엔은 오늘날 國際關係의 基礎를 이루고 있으며 또 그러해 왔다. 다시 말하면 유엔憲章의 前文과 本文의 條項들은 1945年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단지 一部國家들의 意思와 合意事項을 記錄해 놓은데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世界의 圧倒的 多數國家들이 國家的 및 國際的 行動의 標準을 表明해 놓은 것이라고 看做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表明은 보다 더 큰 妥當性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全世界民의 意志로 看做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意味에서 韓國에서의 유엔의 行動이 유엔憲章이 拒否하는 交戰行爲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拒否하는 北韓의 態도는 正當性을 지닐 수가 없다.

유엔憲章은 武力의 使用을 糾彈하면서도 다음의 두가지 경우에

限해서는 그 例外를 認定하고 있다. 즉

1) 유엔의 權威아래서 特히 憲章 第7章의 規定에 依拠하여 武力을 使用하는 경우

2) 個別的 및 集團安全保障에 關한 憲章 第51條의 경우등 두가지 이다.

유엔과 韓國戰 遂行에 有形的으로 寄與한 國家들은 유엔의 精神에 따라 유엔의 要請에 依해 그리고 유엔의 主導下에 韓國戰에 參戰했던 것이며 이것은 明白히 유엔憲章과 現 國際法規範의 테두리內에서 實際로 그의 要請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유엔이 스스로 不法化하고 있는 戰爭을 遂行했다고 말하는 것은 유엔憲章上의 文句와 意圖를 歪曲하는 것이 된다.

眞實로 韓國戰과 關聯된 유엔의 活動은 傳統的 國際的 規範上의 交戰行爲라고 判斷되어서는 안되며 犯法者에 加하는 國際社會의 意志라는 바탕위에서 判斷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對해서

[퀸시 라이트] (Quincy Wright)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유엔은 그 現形態에 있어 유엔憲章에 根拠를 두고 있으나 憲章을 超越하는 그 무엇이다.

憲章은 文書이다. 유엔은 公共機關 및 政策뿐만 아니라 그 機關과 政策에 活動을 불어넣는 個人들의 意見과 態度로 構成되는 組織體이다.

유엔은 그 機構와 專門機關들의 聯合된 行動속에서 存立할 뿐만 아니라 聯合된 國家들의 政策속에서 存在하고 있으며 또

유엔憲章 前文이 「決斷」과 「決意」로써 유엔을 탄생시켰다고 말하
는 世界民들의 態度로서 存続하고 있다.

北韓이 本質에 있어서 그들의 行動을 糾彈하는 法規範에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니라 니칼한 일이다.

다음은 유엔의 管轄權주장에 對해 例外가 되는 國內管轄權 問題
를 檢討해보기로 하자.

가장 넓은 意味에서 「國內管轄權」이라는 概念은 國際法의 適用
을 받지 않거나 國際法의 關心事에 속하지 않는 問題를 處理함에
있어서 한나라가 自治와 完全한 自由를 누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 概念의 內容은 明白한 國際的 合意가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分明치가 않다. 사실 이 概念과 그 概念內容
은 國際社會의 분위기와 影響에 따라 變化하고 있음이 分明하다.

國內管轄權이라는 概念은 歷史적으로 國內的인 問題에 對하여 어
떠한 國際的介入도 排擊하기 爲해서 使用되어 왔으며 또 그 概念
內容을 規定할 必要도 없이 갖가지 國際條約의 適用排除를 주장하
고 國際聯盟의 根限을 制限하기 爲해서 使用되어 왔음을 記憶해야
한다.

또 國內管轄權을 理由로 하는 國際條約의 適用排除主張이 特히
유엔憲章 第7章에 該當하는 모든 事項에 關해 拒否되어 왔다는
事實도 注目해야 한다.

따라서 当初에 韓國戰의 경우에서 그랬던 것과 같이 유엔이 憲
章 第7章에 따른 措置를 取할 때에는 國內管轄權主張(例컨대, 內

亂 또는 國內問題라는 따위의 北韓主張)이 自動적으로 拒否될 것은 明白하다.

또한 最近 數年 동안 國際管轄權의 判斷基準은 國際法 關心說이라든가 國際的 反應說로 알려진 原則에 立脚해 왔다. 이에 對해 權威者의 말을 빌면

즉問題들은 平和에 對한 威脅, 平和의 破壞, 또는 侵略行爲를 構成할 때 國內管轄權으로부터 除外된다. (또는 國內的 性格에 關係없이 安全保障理事會가 行動을 取할 수 있다). 國際的 反應說은 어떤 問題가 平和에 對한 潛在的 威脅이 될 때는 언제나 그 問題는 이미 國內管轄權에 屬하는 問題가 아니라 國際社會의 關心事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關心」이 그 問題에 關해서 取해지는 措置를 正當化하거나 國際管轄權을 成立시킨다.

前述한 바로부터 國內管轄權의 概念과 그 內容은 過去에 그랬던 것처럼 各國의 「國內管轄權」主張에 依해서 決定되는 것이 아니라 「國際的 關心」과 「國際的 影響」이라는 原則의 基準에 따라 決定된다는 것이 明白해 진다. 바꾸어 말하면 어떤 問題가 現實的 또는 潛在的인 威脅이라거나 平和의 破壞라거나 또는 侵略行爲라는 理由로 그 問題에 關해 國際機構(즉 「유엔」)가 管轄權을 行使한다면 그 問題는 이미 國內管轄權에 屬하는 問題가 아닌 것이 分明하다.

政治的 觀點에서 보더라도 統一問題를 包含하는 韓國獨立의 問題

가 国内管轄權에 屬하는 것이라는 北韓側 主張을 支持하는 것은 不當한 것으로 생각된다 .

무엇보다도 現在 統韓問題가 부닥치고 있는 딜렘마의 本質은 유엔 創設前에 그리고 유엔의 存統期間中에 이루어진 國際的 行爲의 産物이며 (1950 年代에 있어서와 같이 여전히 未解決 狀態에 있는) 韓戰에 是 바로 유엔 自身을 包含하는 韓國以外의 交戰國家들이 介入했었다 . 참으로 韓國의 경우는 20世紀의 標準에서 国内管轄權의 內容이 變化하는 하나의 象徴적인 例라고 말할 수 있다 .

그러나 政治的 機構들이 国内的인 問題에 關해 基本的 決定을 내리는 限에 있어서 國際政治의 流動性이 認定된다면 国内管轄權이라는 概念은 根本적으로 國際政治의 優勢한 力學關係와 均衡에 따라 그 實質內容을 變化해 가는 脆弱한 商品에 不過하다는 事實에 注意를 喚起시키고자 한다 . 달리 말하면 國際管轄權에 屬하는 問題들이 決定權을 가진 유엔의 多數派 會員國들에 依해 決定되는 限 国内管轄權의 概念을 決定하는 標準은 國際政治의 「風向」에 따라 起伏을 보이는 유엔內에서 投票動向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2. 유엔憲章과 韓國問題: 軍事的 및 政治的 行動의 規模

國際紛爭의 合理的이고 平和的인 解決을 爲해 武力의 使用을 抑制하려는 努力은 20世紀 國際機構의 한 特徵을 이루어 왔다. 마찬가지로 具體的인 戰爭事實은 그 名稱이야 如何間에 과거에도 그 했던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國際關係의 한 現實的인 部分을 이루고 있으나 유엔憲章과 現代의 國際法 規範들은 모두 戰爭의 法的地位를 否定해 왔다.

그러나 分明히 戰爭은 아직도 現代國際關係의 重要한 한 實際的 部分이고 國家들이 그들의 意思를 敵對國에 強要하는 主要한 手段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法의 領域과 힘의 限界가 複雜하게 얽혀져 特定 時期에 不可避한 것으로 보이는 어떠한 行動도 取할 수 있게 하는 것 같다. 戰爭이나 武力의 使用에 對한 一般的 糾彈에서 몇가지 例外가 認定되고 있지만 이러한 例外는 權利에서 나오는 問題라기 보다는 必要性에서 나오는 問題라는 點이 想起된다. 實際로 유엔憲章은 一般的인 糾彈對象에서 두세가지를 除外해 놓고 있다. 그것은

즉 ①憲章 第7章이 規定하는 「強制措置」에 依한 것, ②第51條 自衛規定에 依한 것, 그리고 아마도 ③武力의 使用을 包含하여 유엔이 制裁措置로서 加하는 努力 등이다.

유엔이 周知하는 바와 같이 國際平和와 安全을 維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엔自體의 欠陥에 그 原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重要性을 갖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도 그 原因이 있다.

그것은 즉 ①國家들이 유엔의 決定事項을 遵守하지 않는 것. ② 자주 유엔措置의 前提條件이 되는 特定한 行動 및 內容을 明確하게 定義할 수 없는 것(「武力攻擧」, 「侵略」등) ③유엔의 意思를 會員國(非會員國에도)에 賦課할 수 없는 實際的인 不可能性 ④ 主要安全維持活動을 獨立國家의 軍隊에 繼續依存하고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重要한 것은 ⑤ 強大國들의 強硬한 對立으로 特徵지워졌든 「冷戰」國際政治였다.

根本的으로 유엔의 平和構想도 적어도 다섯 가지의 基本的이고 下向的 形式으로 된 規定 즉 ① 憲章 第2條3~4項과 第6章上의 義務, ② 憲章 第7章上의 義務 ③ 第12條를 條件으로 하는 第10條 第11條上의 義務 ④ 憲章 第52條 및 ⑤ 憲章 第51條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憲章이 規定하는 基本的 類型으로부터 어떤 傾向을 밝혀 보기 위해 이들 各各을 暫間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1) 第6章 및 第2條~3~4項의 義務,

國家間에 意見不一致나 紛爭이 일어나는 경우에 유엔憲章의 갖가지의 自發的인 平和的 解決方式을 要하지는 안더라도 이의 適用을 勸奨한다. 따라서 憲章은 一次的으로 모든 會員國들에게 「國際平和와 安全 및 正義가 危殆롭게 되지 않는 平和的 方法」으로 國際紛爭을 解決하고 「國際關係에서 어떤 나라의 領土保全이나 政治的 獨立에 威脅을 加하거나 武力行使를 하지않는」義務를 지우고 있다. (第2條3~4項) 이러한 目的을 爲해 憲章은 모든 會員

國이 「協商, 調査, 仲裁, 和解 및 法的인 解決이나 平和的 手段」에 依해 그들의 紛爭을 解決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 (第33條 第6章)

上述한 바에는 會員國이나 非會員國이나를 莫論하고 모든 國家들이 紛爭의 解決을 위해 自願的이고도 平和的인 方法으로 모든 可能한 手段을 다해야 한다는 유엔의 主張이 內包되어 있다.

紛爭 當事國들이 上記 方法에 依한 紛爭解決에 失敗하거나 이러한 紛爭이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에 影響을 미친다면 關係會員國 또는 非會員國들은 이를 安全保障理事會에 付託할 수 있다.

(第32條) 마찬가지로 어떠한 會員國이나 非會員國의 어떤 紛爭이라도 또는 國家的 마찰을 誘發하거나 紛爭을 惹起시킬 수 있는 어떠한 事態라도 이를 安全保障理事會나 總會에 付託할 수 있다.

(第35條 1~2項), 그리고 安理會는 解決條件을 包含하는 適切한 解決方案을 勸告할 수 있는 權限을 갖고 있다. (第36條, 第37條)

周知하는 바이지만 最近의 中東危機와 關聯하여 安理會가 벌리고 있었던 努力은 비록 큰 效果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安理會가 第6章의 規定에 따른 解決方法에 呼訴한 典型的 例다.

여기서 安理會에 依해 決議된 모든 것들은 無視되었으며 各 當事國들은 그들이 主張하는 目標實現을 위해 계속 軍事的 手段에 呼訴하고 있다는 것은 注目해야 할 것이다.

2) 第7章上的 義務

「平和에 對한 威脅, 平和의 破壞, 또는 侵略行爲」(第39條)가

存在하고 있음을 安保理가 最終적으로 判斷한다는 것은 疑心할 바 없다. 그러나 이러한 權限은 「冷戰」과 이에 얽힌 狀況으로 因해 安保理가 機能을 發揮할 能力을 喪失함으로써 最近 數年동안 다만 「文書上的 特權」이 되고 말았다.

어떠한 行爲를 「侵略行爲」라 規定하거나 第39條에 該當하는 다른 行爲로 規定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같이 實際로 어려운 것이다. 유엔과 같이 行爲를 取하기 위한 前提條件으로서 形式的으로라도 어떤 行爲에 대한 定議를 必要로 하는 機構에 있어서는 「平和에 對한 威脅」이라든가 「侵略行爲」라는 등의 用語에 關해 主要 強大國들간의 意見不一致가 일어나는 경우 그 機構를 실제로 無力化시킨다.

그러나 유엔憲章 特히 그 第7章은 國際平和와 安全을 維持하는 基本的인 責任을 安保理에 賦課하고 있다. 어쨌든 理論上 第7章의 規定에 依拠한 安保理의 決定에는 上級審이 있지 않으며 安保理의 이러한 權限은 國內管轄權主張이나 다른 規範에의 呼訴로 制約받지 않는다. 實로 軍隊의 使用을 包含해서 第7章에 依拠하여 取해지는 모든 措置는 完全하고 絶對的이며 最終的인 것이다.

終前까지의 冷戰狀況을 考慮할 때 安保理는 거의 國際平和의 主要道具로서 믿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며 또 現 國際紛爭의 程度와 戰爭을 定議할 때 나타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考慮한다면 어떤 強大國家가 그들의 盟邦에 對한 強制措置에 실제로 同意한다는 것은 더욱 可能性이 없을 것 같다. 實로 強大國의 利害가

엷힌 紛爭은 그 어떤 것도 安全保障理事會를 通해서 解決될 수 없으며 또 強大國의 利害가 엷히지 않은 事件은 거의 없었다.

이것은 中東, 헝가리 및 체코슬로바키아 등의 경우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範圍의 경우를 除外하면 國際紛爭이 解決되는 程度는 거기에 엷힌 強大國의 利害程度에 대체로 比例하는 것 같다. 유엔이 콩고에서 取한 措置는 強大國들이 여기서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可能했던 것이 아니라 強大國이 相對方의 利益을 相互 견제함으로써 可能했으며 또 安保理가 아니라 總會의 主導 아래 이루어 졌던 것이다.

3) 第10條~第12條上의 義務

紛爭의 平和的 解決에 關한 事項을 包含하여 「憲章의 範圍內에 屬하거나 憲章에 依해 規定된 어떠한 機構의 權限과 機能에 關한」 모든 事項에 對하여 總會가 勸告權을 行使하는 것은 分明히 유엔에서 重要한 새 傾向으로 되어가고 있다. 비록 第10條 및 第11條上의 總會의 特權이 第12條에 依해서 制約받기는 하지만 (즉, 安保理가 「어떤 紛爭이나 事態에 關聯해서 그에 賦與된 機能을 行使」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限해서) 이 特權은 유엔의 平和維持 機能中 多數가 遂行되는 主要經路가 되고 있다. 그리고 分明히 總會의 地位가 이에 따라 上昇하고 있는 것은 이 點에 關한 安全保障理事會의 無力性에 비추어 볼 때 理解할 만한 것이다.

비록 安全保障理事會의 權限과 機能을 「篡奪」하는 것이라는
非難이 없지도 않았지만 總회가 1950年 11月 3日 歴史的인 「平
和를 爲한 團結」 決議案을 採択함으로써 蘇聯의 拒否權行使을 피
하여 韓國에서의 유엔活動을 可能하게 했고 마찬가지로 中東과 콩
고에서 平和維持活動을 벌인 것은 이들 두 規定(第 10條 및 第
11條)에 依拠한 것이었으며 이것은 이제 유엔 集團安全保障體制
의 바탕으로 認定되고 있다.

不幸하게도 安全保障理事會가 「冷戰」에 依해 非能率化해지는 한
편에 있어서 量的으로 會員國數가 增加한 總회는 지나치게 恣意的
이거나 아니면 그들이 表明하는 意思를 뒷받침 할만한 眞正한 힘
을 갖지 못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役割과 機能을 遂行함
에 있어서 종종 遲擱한 態를 보이기 까지 했다.

그리하여 유엔 「警察活動으로부터 緊張緩和活動, (Homeostatic
Activity)로 옮겨 갔으며... (또) 支配的인 保全機能은 調査判
定 및 執行機能이 아니라 「強度減少」機能으로 登場했다...」

4) 第 52條上의 協定

本 憲章上의 어떠한 規定도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에 關係
되는 問題를 다룰 地域協定이나 機構의 存在를 排除하지 않는다.

둘이켜 보면 憲章이 세 地域協定の 妥當性을 予見하고 이러한 協
定들은 유엔體制의 構成部分으로 包含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왜냐하면 國家들이 國家的 地域的 安保要求에 副應하기 위해 地域
協定을 利用하는 경우는 점점 增大되어 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北大西洋條約機構(NATO)와 美洲機構(OAS)는 憲章 第52條의 規定에 根拠하는 것으로서 바로 유엔의 非效果的인 世界安保協定の 代役을 해 왔다. 地域協定은 世界 安保體制를 代身하려는 데 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補充하려는 데 目的이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最近 數年 동안에 있어서는 本末이 顛倒되지 않았나 하는 疑心이 들고 있다. 平和의 地域的 國際的 性格에 關한 學術上의 贊反兩論이나 무엇이 地域協定이나에 關한 定義가 없는 것에 相關없이 地域安保의 手段으로서 地域協定에의 依存度가 增加되어 왔다는 事實은 否認할 수 없다.

유럽이 比較的 平和를 維持하고 있는 것은 世界的 集團安保體制에 依해서 可能한 것이 아니라 地域的防衛協定(NATO)에 依해서 可能해진 것이며 古巴에 對한 OAS의 措置는 유엔이 아니라 OAS, 特히 「리오」協定(Rio Pact)의 主導下에 可能하게 되었다.

聯國으로서는 그 자신의 將來를 爲해 軍事 및 安全領域에서 뿐만 아니라 地域的 發展을 爲한 모든 努力을 기울임에 있어서 諸 地域協定들의 將來를 살피 必지하다.

5) 第51條上의 協定

個別的 및 集團의 自衛權은 유엔에만 固有한 것이 아니며 이 權利는 國際法上 어떤 나라에 對해서도 認定되어 왔다. 오늘날 世界各國은 世界的 安保體制가 失敗함에 따라 個別的 및 集團의

防衛體制에 依存하게 된 것이 事實이다. 競爭狀態에 있는 聯合體制網들은 그 生생한 本보기이다.

이와 關聯, 「戰爭」이나 「侵略」 등의 性格이 變化하고 있고 또 變化된 것에 비추어 「個別的 및 集團的 自衛權」의 發動을 許容하는 條件에 對한 美蘇間 양진영의 見解差異를 考察해 보는 것은 意味있는 일이다.

蘇聯 「불력」은 대체로 自衛權(武力의 使用을 包含)이란 武力攻擊이 發生할 「때」와 發生하는 「경우」에 限해서만 主張될 수 있다고 내세움으로써 武力攻擊의 潛在的 危險이나 武力攻擊의 威脅은 憲章 第 59 條에 規定된 自衛的 發動의 根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蘇聯은 基本的으로 危險의 重大性이나 緊迫性, 介入된 軍隊의 規模 및 「어느쪽이 先制攻擊했었느냐」하는 歷史的 事實에 判斷基準을 두어 왔다.

그러나 西方 「불력」은 다음과 같은 多少 融通性 있는 見解를 따르고 있는 것 같다. 즉 ①現代 國際社會의 現實은 「武力攻擊」의 正確한 判斷을 不可能하게 만들고 있고, ②各國은 重要한 國家利益에 對한 다른 形態의 侵害에도 敏感하므로 「武力攻擊」의 判斷과 이 判斷에 따르는 自衛權의 發動은 個個의 경우에 現實的인 攻擊과 緊迫한 攻擊威脅이라는 두개의 答辯的인 基準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具體的으로 말하면 各各의 경우는 그때 그때의 具體的 狀況에

따라 個別的으로 判斷될 것이며 武力攻奪에는 國家主權에 對한 古典的 武裝 侵害와 그 形態를 달리하는 侵害도 包含한다는 것이다.

韓國의 경우에 있어서 「武力攻奪」을 判斷하는 基準을 決定하는 것은 거의 學問의 領域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法的 定義가 없다고 해서 한나라로 하여금 自衛權을 行使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韓國에 對해 法的定義를 위해 國家로서의 存続을 抛棄하라고 要求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참으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國際社會가 韓國에 對해서 要求할 수 있는 모든 것은 韓國이 自衛를 爲한 實力行使를 決定하기 前에 武力을 除外한 可能한 모든 合理的 手段을 實際로 다 하라는 것 뿐일 것 같다. 이러한 基準에서 보면 平和的이고 合理的인 解決方案을 摸索하는 과정에서 北端이 취한 行動은 韓國과 比較할 때 측은할 정도로 拙劣할 것이었으며 統聽을 爲한 모든 合理的 方案들을 公公然히 無視하는 것이었다.

世界가 「安定」을 維持해 왔다고 본다면 (2次大戰以後의 全世界가 現狀維持를 해 왔다는 넓은 意味에 있어서만) 그것은 유엔 憲章의 規定에 依해서라기 보다는 地域協定에 依存하거나 이의 支持를 받음으로서 또는 自衛權에 呼訴함으로써 可能하게 된 것이라고 말해도 誇張이 아닐 것 같다. 完全하고 絶對的인 安保는 不可能하다 하더라도 不安을 減少시키는 것은 實際로 可能한 일이다.

그러나 유엔이 特別히 安保問題라는 切迫한 領域에서 보여준 欠陥과 非能率性은 유엔 自体의 欠点에서 나온다기 보다는 아직도 대

체로 「權力政治」方式에 따라 움직이는 會員國들로부터 나온다는
데에 注意를 돌려야 할 것이다. 사실 聯合된 機構가 그 會員
國의 集團意思를 超過하는 行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第3章 「UN」과 韓國

1. 「UN」의 變化理由
2. 韓國对 「UN」 關係
3. 北韓의 「UN」 政策

1. UN의 變化理由

UN이 變化되었으며 現在도 變化되고 있는 데에는 몇가지의 理由가 있으며 이 要素들은 다음 몇가지로 指摘될 수가 있다. 첫째, 戰爭이나 武力衝突을 完全히 禁止시킬 수 있어야 하는 憲章이 몇가지의 例外規定으로 戰爭을 完全 禁止化를 못하고 있다.

즉 憲章 第 51 條에 依한 武力使用이 그것이다.

이 個別的 集團의 自衛權은 그 意味하는 바가 戰爭이 다른 戰爭行爲를 防止할 目的으로 使用된다면 正當하고 合法的이라는 것이며 이것은 즉 防衛戰은 憲章이 保障하는 戰爭이라는 意味가 된다. 일단 모든 武力衝突이 發生하면 그들은 서로 自衛의 行使라는 主張을 하게 되는 것도 이때문이다.

그러나 憲章上에는 어느 境遇가 防衛的 武力行使인지에 對해 아무런 規定도 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UN 憲章이 지닌바 重大한 弱點이 되는 것이다.

둘째, 비록 "人道主義的" 干涉이란 用語가 使用되지는 않았지만 實質的으로 어느 國家가 非人道主義的 行爲를 할 경우 이의 除去를 위해서 UN이 干涉하여 왔던 것은 事實이다.

예를 들면 UN은 人道主義的 理由로써 콩고, 남아연방, 그밖의 事件에 干渉해 왔다.

또한, 人道主義와 人種差別을 理由로 로제지아의 Ian Smith 政府를 전복시키려는 集團의 行爲를 支持하였다. 여기서 重要한 것은 人道主義的 干涉에 對한 規定이 없다는 것과 그러한 干涉이 窮極的

으로 모든 나라에 適用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셋째, 萬若 上記 두 要因이 戰爭이나 武力行使를 不法化시키지 못한다면 이와 結付시켜 憲章自体에도 弱점이 있는 것이 된다.

즉 그것은 現 國際政治가 變化의 速度가 迅速하여 紛爭이나 武力衝突을 UN이 發見하였을 때에는 이미 어떤 措置도 이 發生된 武力行使를 阻止시킬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UN이 介入할 때에는 事態가 너무 심각해져 있어 事態調節을 爲한 UN의 措置는 無用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넷째, 또한 現 國際政治 때문에 對立이나 衝突은 普通 發展途上國이나 後進國에서 主로 "內亂"의 形式으로 發生한다.

憲章 2條7項은 "內亂"을 國內管割條項으로 規定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지 UN의 干涉을 拒否하고 싶은 경우 그 事態가 "內亂"이라고 主張을 하게 된다.

이 內亂의 確實한 狀態를 UN에서 規定하고 있지 못하므로 歴史的으로 UN의 干涉을 防止하는 効果적인 方法으로 이 主張이 使用되어 왔다.

다섯째, 冷戰의 體制下에서 모든 武力衝突에는 적어도 한나라 以上の 強大國이 介入되어 왔다. 이때문에 이들 強大國은 UN에서 Veto를 가지고 있으므로 UN의 介入이 自己側에 不利할 경우가 Veto權을 行使하여 安保理의 決意를 통한 問題解決을 防害해 왔다.

여섯째, UN의 決定은 投票를 통해서 成立되며 投票는 各 會員國의 國利를 反映시키는데 따라서 各 事件에 對한 UN의 票決 結果와

標準은 一貫性이 없게 마련이었다.

이렇게 一貫性없는 UN의 標準은 世界 諸國家들로 하여금 紛爭 解決을 爲해 UN에 依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要因들이 되고 있다.

實際로 이것이 意味하는 바는 UN이 各 國家의 利益에 相當할 때는 各 國家로부터 支持를 얻을 수 있지만 排馳될 때는 UN에 不服하게 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일곱째, 憲章은 武力衝突에 對한 責任者를 糾明해야 여기에 処罰을 加할 수 있는데 現代 戰爭의 特性은 이 責任者를 判別할 수 없도록 複雜한 樣相을 띠고 있다. 最近의 戰爭들 가운데 特別히 越南戰의 경우를 보면 이 責任者의 判別이 거의 不可能하다는 것을 잘 알수 있는 것이다.

여덟째, UN의 非效率性은 또한 UN의 變化理由가 되고 있다.

그것은 즉 會員國들의 數的인 面이나 政治的 性向이 變化하고 있다는 面에 關聯된 것이다.

UN의 標準이 票數로 決定되는 限 이 問題는 繼續 問題거리가 될 것이다. 例로써 美國이 UN에서 多數를 支配하고 있던 過去에는 別問題가 없었지만 最近 많은 나라들이 새로이 UN에 加入함으로써 美國의 多數의 優位는 喪失하였으며 어떤 問題에 對해서든지 美國이 多數를 얻기 爲해서는 많은 努力이 必要하게 되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美國도 UN에서 敗할 수 있는 可能性이 생긴 것이다.

UN 會員國이 繼續 增加하고 이들이 UN에서 美國을 쉽게 沮止

하자 안는 限 美國의 地位는 매우 不安해 질것이다.

이러한 側面은 最近 政治的 經濟的으로 後進國들이 UN에 加入하고 있으며 이들은 UN에서 投票行事に 自國의 國利에 매우 敏感하므로 結果的으로 UN은 決議案 通過에 매우 高심하며 어떤 境遇 매우 意外의 結果가 나오기도 한다.

아홉째, 上記 言及된 理由들로 因해서 그리고 이와 結付된 다른 理由로 因해서 UN規範의 行使는 어렵거나 거의 不可能하게 되었고 이렇게 UN이 漸次 信任을 잃어가므로 때때로 憲章이 無視되거나 憲章에 正面으로 挑戰하는 國家가 나타나는 것이다.

어떤 國家들은 自國의 國利에 適當한 境遇에 限해서 UN의 決定을 받아 들이는 데 이는 UN의 標準이 매우 弱化되고 無視되는데도 UN自體의 아무 變化도 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열째, UN은 憲章에서 高度로 矛盾된 觀念과 概念을 包含하고 있다.

예를 들면 憲章 10條~12條와 6章과 7章의 條項들은 總會와 安全保障理事會에 많은 權威와 權限을 주었으나 이런 權威와 權限은 憲章 2條 7項의 條項에서 規定하고 있는 것처럼 "紛爭이 國內問題에 屬할 때는 國聯國의 管割을 爲해 UN의 介入을 制限한다."에 依해 權威와 權限을 스스로 制限하고 있다. 또한 第51條의 경우 個人이나 集團的 國家의 無制限한 自衛權의 行使를 規定하고 있으며 이 自衛權은 第52條에서 安全保障理事會가 "適切한 措置"라고 規定할 때는 制限받도록 明示하고 있다.

以上은 憲章이 內包하고 있는 몇가지 모순의 例에 不過하다. 따라서 各國家들은 事態發生時 自國에 有利하도록 憲章을 풀이하는

傾向이 있다. 이런것들은 누적되어 UN의 標準을 弱化시키는 것이다.

열한째, UN을 創始한 國家들의 의도는 몇개의 國家가 選拔的인 國家群으로 構成되는 國際機構를 設立하려는 것이었으며 이 機構는 安保理의 全般的인 權限行使下에서 集團的 行動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標準이 缺如된것 때문에 無用之物이 되었다. 憲章에 依하면 國際司法裁判所의 解釈에 基礎를 둔 主觀的인 法的 判定은 政治的 決定을 強調하는 傾向이 있다. 이 最後의 政治的 決定은 憲章 第39條1項에 의해 安保理에서 내리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이 政治的 決定은 集團政治의 편견의 產物이므로 憲章標準은 一貫性이나 同一性이 없게 된다. 이렇게 一貫性이나 同一性이 없으므로 會員國들에게 標準을 不信하도록 한다.

열두째, 國際司法裁判所가 決議를 執行할 能力이 없고 또 UN이 이 決議를 代身해서 執行할 能力이 없으므로 司法的 機構를 통한 客觀的인 標準을 期待한다는 것이 어렵다.

이에 對한 例로서 朝鮮이 國際司法裁判所의 決議에 依해서 UN非常對策委 運營費를 負擔하라는 決定이 있는데 이를 拒否하였다. 이 境遇에 UN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朝鮮의 이같은 境遇가 UN의 標準을 公認으로 돌아 넣었다. 本質的으로 가장 根本的인 重要性을 갖는 것은 어떤 事件에 어느 國家가 關涉되어 있는가 이지 問題 自体는 아니라는 點이다.

열세째, 安保理의 永久常任理事國이 永遠히 世界속에서 強大國으로 地位를 繼續할 수 있을 것이나 自体가 疑問視되는 限 UN은

缺陷을 지니게 되며 이것이 또하나의 缺點이 된다. 憲章은 國際政治가 變化되는 風土에 따라 變해야 되는데 憲章의 改定節次는 永久常任理事國들로부터 萬場一致의 贊成을 얻어야 되며, 이것은 常任理事國 가운데 어느 한 나라도 提出된 變化에 對한 提議案을 否定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變化가 自國에 不利하다고 생각될 때는 어느 常任理事國이라도 反對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UN 憲章의 不變性과 停止狀態는 또하나의 缺陷이 된다.

또한 英國과 仏國西 兩國이 永久常任理事國의 地位는 問題가 있는 것이다.

열넷째, 最初부터 UN은 蘇聯을 包含한 二次大戰의 同盟國들을 中心으로 團結의 假定을 前提로 했지만 그 後 온 世界는 이것이 어리석은 期待였음을 立証시켜 주었다. 實로 世界는 2次大戰以後의 強大國이 分斷, 特히 美蘇의 分斷이 여러해 동안 危險한 狀態가 繼續되었다. 이것을 冷戰이라고 表現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이 結果 強大國들은 UN의 안팎에서 勢力擴張에 熱을 올려 왔다.

勿論 샌프란시스코會議의 期待는 아랑곳 하지도 않고,

열다섯째, 또한 UN 憲章은 第二次世界大戰 終結時의 狀況에서 世界의 領土的 現狀維持를 想想하였으며 모든 政治的, 領土的 變化는 憲章에 依해 禁止시켰다.

그러나 終戰後의 領土的 變化는 實로 數없이 많았다. 終戰後의

領土變化를 가져온 戰爭의 數와 戰爭의 頻도와 武力衝突은 靜的
이며 地理的 現狀維持의 本來 假定을 否認하는 傾向이 있었다.
 일어선채, 最初의 UN 構想國들은 傳統的 戰爭의 樣相속에서 戰爭行
 爲와 交戰狀態의 本質을 測定하였는데 實은 終戰後의 戰爭樣相은
 傳統的 樣式에서 벗어나는 게릴라戰의 樣式을 띤 것이 大部分이
 였다. 즉 UN은 戰爭規定을 效果的으로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特히 두 強大國사이의 理念的 競爭이란 點은 想像도 못했던 것
 이었기에 敵對와 戰爭行爲는 國際社會에서 主視하지 않았던 것이
 며 共產主義 이데오르기는 " 國家解放戰 或은 自決權 戰爭 " 이란
 名目下에 遂行된 武力行爲를 正當化시키는데 適切한 辯明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

以上에서 言及된 理由들은 UN의 本質이 變化를 가져오는 것들이다.

2. 韓國對 UN關係가 갖는 意味

韓國과 UN과의 關係가 갖는 重要性을 正確히 測定하기 爲해서 는 UN의 本質을 먼저 把握해야 한다.

다음 몇가지는 UN의 本質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韓國에 重要性을 지니는가를 살펴 보려는 것이다.

1) 憲章을 最初로 만든 사람들의 意圖가 무엇이던 間에 UN은 同盟을 意味한다.

그러므로 集團安全機構로써 UN이 成立하였는 것이다.

憲章에는 會員國들 間의 主權平等이 明示되어 있다.

主權이 UN에 있지 않고 集團이 되어 機構를 構成하는 國家들에게 있는 限 如何한 경우라도 UN의 本質을 最終적으로 糾明하는 것은 會員國의 集團的 意思 내지 能力이다.

UN會員國들이 그들의 國利에 맞춰서 行動하고 投票하는限 國際的 利益이나 安全保障, 國際法은 會員國들이 每回 提起된 問題들에 對해 行事하는 投票의 反映이다.

따라서 UN의 標準은 各 會員國들의 國利가 交함에 따라서 多樣하게 變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標準은 國際政治에 依해서 影響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韓國은 UN을 完全한 決意를 할수 있는 機構로 보지 말고, 항상 基準은 變하고 UN의 決定은 適法性과 正當性이 없는 것으로 把握해야 된다.

2) 上記 言及한 事實들 때문에 韓國은 UN을 外交政策을 遂行하는 한 手段으로가 아니고 그 手段 自体도 아님을 알아야 한다. UN은 韓國이 그 外交政策을 遂行하는 많은 手段들 가운데 하나임을 銘心해야 한다. 그리고 韓國의 對UN政策遂行에서 成敗如何는 韓國自身的 國利問題이다.

外交政策은 國家利益을 決定한 後에 樹立하는 것이며 正確한 外交政策이 決定된 後에는 外交政策의 遂行이 兩國과의 外交關係나 UN과 같은 多邊的 外交關係로 나타나는 것이다. UN을 支持하는 것이 韓國의 國利에 付合될 境遇에는 韓國은 UN과 協調를 해야 하며 支持해야 할 것이지만 UN이 韓國의 國利에 排馳될 境遇에는 이를 變化시킬 準備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매우 重要하지만 이의 重要性은 UN의 本質에 달려있는 것이다.

여러 경우에 UN에 挑戰하는 國家들이 많았으며 이 모든 挑戰은 UN이 賦課하는 義務와 그 標準이 自國의 國家利益과 相衝되었기 때문이다.

國際輿論과 憲章上的 規制에도 不拘하고 UN에서 撤収했던 인도네시아의 경우를 보라.

UN의 要求에 不応하고 挑戰한 로제지아의 경우와 남아연방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것 들이다.

우리에게 地理적으로 가까운 中共의 경우는 中共의 國利가 UN과 相衝된限 繼續 UN에 挑戰했었다.

또한 北韓의 경우도 UN의 權威에 挑戰한 例이다.

아랍과 이스라엘의 境遇 兩側은 모두 UN의 命令을 듣지 않고 紛爭에 熱을 올렸던 것이다.

이런 例들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問題들을 提示함은 UN이 거짓되고 非實際的인 機構라는 말은 아니다.

비록 UN이 本質은 正當하지만 實際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自國의 國利가 于先한다는 것을 나타내하고자 함이다.

3) 過去에는 UN이 아주 관대했으며 確實히 도움이 되었다. 즉 UN이 韓國을 韓半島의 有一 合法政府로 承認함으로써 韓國은 國際 社會에서 韓國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었으며 여러 重要한 國際機 構에도 加入할 수 있었고 또한 世界 여러나라로 부터 公式的 承認을 받을 수가 있었다. 韓國이 北韓과 同時에 UN에 加入한다면 그 以後의 UN은 어떤 態度로 나올는지 疑問이다.

確實히 두개의 韓國論은 두개의 中國(즉 PRC와 ROC)의 境遇와 는 다른 것이다.

4) 韓國戰의 休戰後 UN은 韓國에 外國軍 즉 美軍의 駐屯을 正當化시킨 것은 意義있는 役割이었으며 또한 板門店協約에 參加한 것도 重要하다.

이 두가지가 모두 韓國의 安保에 直接的으로 큰 價值가 있는 것이다. 비록 韓國에 UN軍隊가 美軍과 함께 駐屯하고 있지만 UN軍의 機能은 特別한 價值를 지니며 이들 兩者는 外交的, 法的 重

重要性을 지닌다.

UN軍이 韓國防衛의 一翼을 担当하므로써 앞으로 北韓이 어떤 挑
戰을 해올 경우 이것은 곧 UN에 對한 挑戰이라고 看做할 수
있는 것이다.

UN軍은 國際的 地位面에서 韓國에게 重寶한 意味를 부여하고 있다.
UN軍이나 美軍이 韓國으로부터 撤收하는 問題는 次後에 論하겠지만
이것은 現在의 休戰線이 北韓·中共 그리고 UN軍의 合意下에 세워
진 것임을 생각할 때 極히 重寶한 意味를 지닌다.

韓國은 休戰協定에 參加하지도 않았으며 現在의 板門店 會談에도
參加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UN軍이 韓國에 繼續 駐屯한다는 事實은 現 休戰이 繼續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5) UN이 韓國에 駐屯함으로써 韓國에 돌아오는 또하나의 利點
은 UN이 韓國을 韓半島의 代辯者로 看做하는 것이 되며 韓國은
北韓政權의 侵略性을 UN에 暴露하고 北韓과 競争을 하지 않고도
世界輿論을 모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다음과 같은 點에서 重要性을 지닌다. 즉 UN이
最近 幾年동안에 憲章이 맨 처음 意圖한바대로 軍事的 行動을 하
였다는 面에서가 아니고 國際輿論을 통한 影響力의 行使였다는 點
에서 意義를 지닌다.

6) UN傘下의 많은 專門機構들은 加入問題를 비롯하여 여러 境遇

總회의 判決에 따르면 韓國은 UN이 韓國을 韓半島의 唯一 合法 政府로서 承認한데 많은 利益을 얻을 수 있었음은 前記한 바와 같다. 또한 이것은 韓國이 國際社會에서 얻은 많은 外交的 勝利에 寄與했다.

7) 故로 韓國은 뉴욕의 UN本部에 代表府를 派遣할 수 있었으며 이로 因해서 UN의 各種 活動을 把握할 수 있었고 UN의 안팎에서 公式的 非公式的 接觸을 할수 있었다. 이것들에 대한 國利가 國際政治의 여러面에서 나타났음은 잘 알고 있는 바다.

3. 北韓의 UN 政策

將來에 있어서의 北韓의 外交政策을 推測한다는 것은 極히 어렵고 또 危險하지만 몇가지 資料들에 依해서 大略의 行動路線을 짐작할 수 있었을것 같다.

北韓의 行動路線에 一貫性은 없지만 다음의 몇가지가 將來에 있어서의 北韓이 追求하려는 政策路線으로 提示된다.

첫째, 北韓은 過去에도 그랬지만 世界各國과 可能한限 友好關係를 樹立하는데 注力할것 같다.

이는 이들에 대한 北韓의 이미지를 好意的으로 바꾸고 그代身 大韓民國의 影響力을 弱化시키려는 것이 된다.

이러한 友好關係를 맺으려는 努力으로 北韓은 親善使節을 派遣할 것이며 또는 이들 나라에 政府 高位級 人事가 訪問하거나 北韓의 이미지를 地域的, 世界的 平和와 安定에 關心있는 나라로서의 印象을 높이기 爲해서도 努力할 것이 明確하다.

이것은 이번 總會에서 得票를 爲한 것도 되지만 앞으로 繼續되는 總會를 爲한 長期的 目的도 있는 것이다.

둘째, 北韓은 國際關係에서 政府로서의 正統性을 認定받고자 統一問題를 利用할 것이다.

특히 이번 總會에서는 北韓의 戰略이 다음 몇가지로 要約되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즉, a) 韓國으로 부터 모든 外部勢力을 撤収시킬 것을 主張.

b) 南北調節委會 依해서 나타난 7.4 共同聲明을 바탕으로 해

서 統一目的을 追求할 것.

c) 韓國人들의 排他的인 努力에 依해서 統一을 成就할 것.

d) 韓國에서 美軍을 撤収시키기 爲해 UNCURK와 UNC의 撤
廢를 主張

셋째, 北韓은 UN이 韓國을 分斷國家로서 固定시키려는 어떤 提
案에도 反對할것 같다.

北韓이 分斷의 固定化를 反對하는 理由는 前例에도 그렇듯이 眞
正으로 자기네들 만이 統一된 韓國에 興味가 있으며 現分斷의 永
久的이라는 어떤 提議에도 反對하는 것처럼 위장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自然히 韓國에 對한 그들의 宣傳을 強化시키려는 意圖가
되며 世界에 對해서는 韓國의 分斷이 繼續되는 것이 韓國때문이라
고 모략하려는 것이다.

넷째, 北韓은 UN에 對한 終前의 立場을 變更시킬 것이며 韓國問
題에 對한 UN의 討議에 同意할것 같고 萬若 UN이 招請하면
UN에 들어갈 것같이 보인다.

이것은 그들이 終前에 主張했던 立場과는 判異한 것이다.

그들은 終前에 韓國統一問題는 오직 韓國人의 努力으로 解決해야
한다고 主張했었다.

그들은 UN에 갈 것이며 UN에서는 온갖 手段을 다하여 西方世
界에 對해서 大韓民國에 對한 自己네들의 正統性을 主張할 것이다.

北韓은 實際적으로 UN에 加入하려 성급하지는 않을 것이며 단지
UN에 代表部만이라도 設置하려 들 것이다.

다섯째, 最近 北韓의 基本政策을 檢討해 보면 北韓은 金일성을

"愛國的 英雄"이며 "民族的 指導者"로 崇拜하고 있는 것을 宣傳하려 할것 같다.

이것은 國際社會에는 別로 興味없는 것으로 받아 들여질 것이 分明하다.

이점에 關聯되어 大韓民國에 關聯性이 있는 것은 김일성이 UN에 出現할 可能性과 그의 出現이 美國에 미칠 影響이다.

大韓民國은 여기에 對해 對策을 세워야 한다.

上記 言及된 몇가지 點은 지금 檢討할 것이며 UNCURK와 UNC의 撤収問題中 다른 問題는 다른 章에서 論議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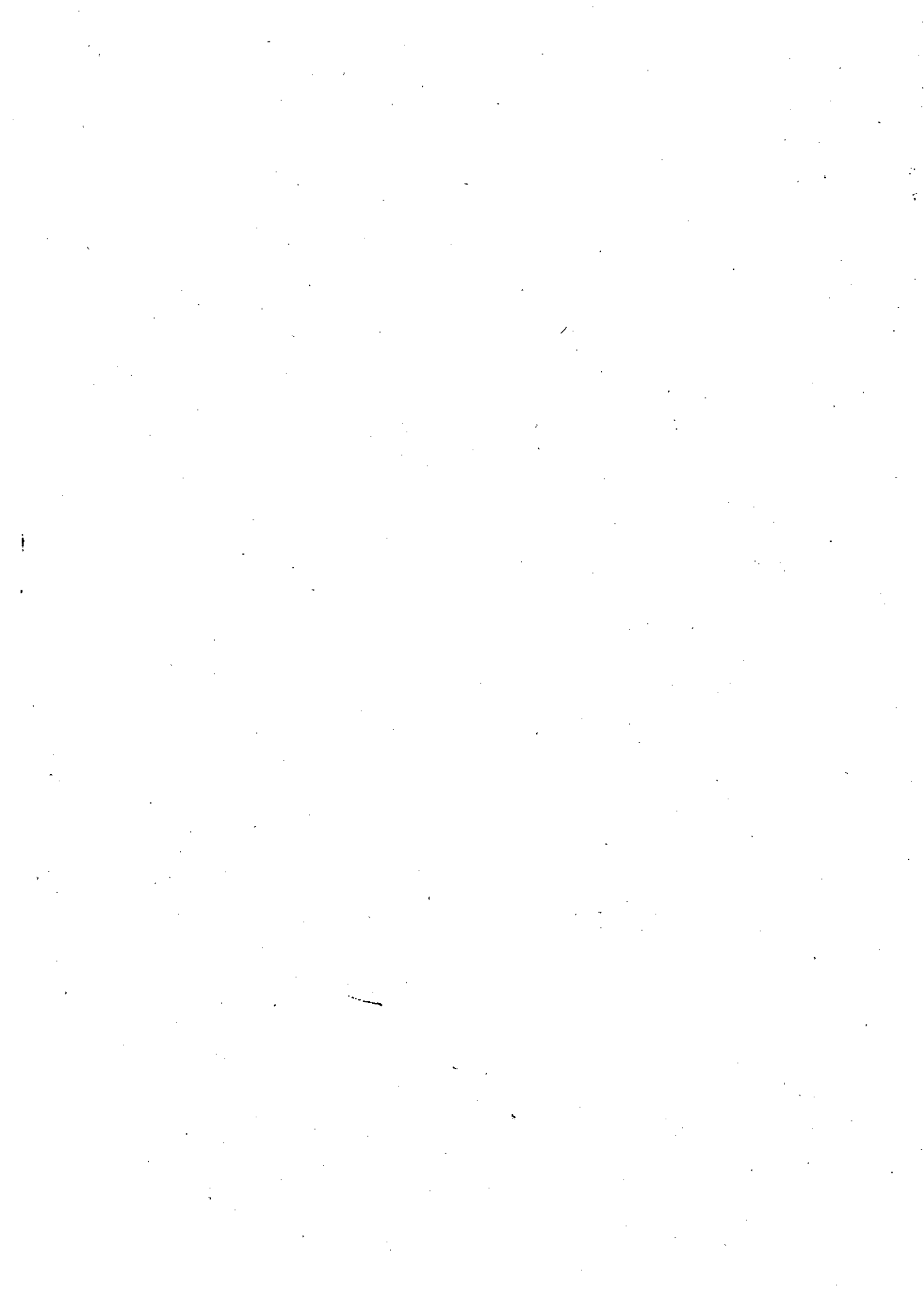
于先 韓國은 北韓이 表面的으로 무슨 말을 하던 間에 北韓이 武力에 依한 赤化統一의 野慾을 完全히 拋棄하지 안았음을 알아야 한다.

前에서도 말했지만 北韓의 政策에는 모순과 一貫性이 缺如된 狀態가 完然하다.

예를 들면 終來에는 韓國問題는 韓國人의 손으로 解決하자고 主張했던 때에 비해 앞으로는 UN에서 즉 國際的 場所에서 宣傳과 呼訴를 하므로써 解決하려 한다.

이에 덧붙여 北韓은 終前에 追求하던 武力에 의한 統一追求를 拋棄한다고 겉으로 約束하는 代身 무장공비의 南派 그밖의 間諜을 南派하여 安定된 韓國을 顛覆시키거나 混亂狀態로 몰아 넣으려고 劃策하고 있다.

以上이 北韓의 外交政策이 一貫性없이 變해은 몇가지 例이다.



第 4 章 「유엔」과 北韓

1. 北韓 同時招請問題에 關한 反對의
根拠와 同時招請의 長短点
2. 北韓의 「유엔」參與와 그에 對한
予備對策

1. 北韓 同時招請問題에 關한 反對의 根拠와 同時招請의 長短点

未久에 있어서 北韓政權이 내세울 것으로 予想되는 外交政策 가운데 特히 對 유엔政策에 關한 것을 分析해 보면 北韓政權은 유엔에 對해서 다음 세가지를 意圖할 것이 推測된다. 즉

- 1) 可能한 여러나라들과 友好的 關係를 가지려는 目的으로 이들과의 關係를 改善 내지 強化하려 할 것이다.
- 2) 可能한限 유엔에 招請받으려 努力할 것이며 韓國에서의 유엔의 役割을 폐지 내지 減少시키려 할 것이다.
- 3) 國際社會에서 合法的 政府로서 承認받으려 할 것이다.

上記 言及된 것들 가운데 두번째 項目이 本章의 研究對象이 된다 北韓政權이 유엔에서 추구하려는 目的들 가운데 가장 重要的 것은 유엔에의 加入을 招請받으려는 것이다.

이 問題에 關해 最近의 유엔總회는 北韓에게 有利한 投票傾向을 보이고 있는것 같으며 그러나 大韓民國은 大韓民國대로 이것을 防止하기 爲해서 다음의 몇가지 點들을 利用할 수 있다. 그러나 現 國際政治 狀況을 分析하건데 다음 提示하는 두가지 理由는 韓國이 北韓의 유엔招請을 防止하려는 努力에 크게 困難을 줄 것이 予想된다. 즉,

- 1) 現 國際政治와 가까운 將來에 있어서의 總會에서의 投票傾向은 北韓側에 有利한 方向으로 점차 옮겨지고 있다는 事實
- 2) 憲章의 特別條項에 依해서가 아니고 總會나 安保理의 節次方式에 依한 招請에 依해서가 아닌, 規定事項이 없이도 北韓은

유엔에 招請될 수 있다.

따라서 上記의 論議들은 유엔의 北韓招請을 效果的으로 防止하는 데 對해 多少 悲觀的이 되지만 그럼에도 不拘하고 다음 몇가지는 韓國이 UN에서 使用할 수 있는 實際的인 効用을 지닌다. 즉,

1) 유엔에서 代表權 問題를 包含해서 韓國問題는 憲章 2條7項에 明示된 國內問題로 要約될 수 있다.

그리고 韓國問題의 國內管割을 가장 잘 說明해주는 것은 現在 進行中인 南北赤十字 會談이다.

그런데 憲章은 2條7項의 例外 즉, 國內的 問題라 하더라도 유엔의 介入可能을 國際平和와 安保에 直接的인 威脅이 될 경우라고 規定하고 있는데 現在의 韓國의 狀況은 事實的으로 韓國問題는 平和的인 手段에 依해서 南北韓 自体로의 解決이나 적어도 그에 對한 希望을 示唆하고 있으므로 國際的 管割 (즉 UN의 介入) 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된다.

確實히 韓半島內의 兩政府가 赤十字會談을 通해서 試圖하고 있는 바는 韓國問題가 憲章 才2條7項에 付合하는 國內管割에 該當되는 問題이며 유엔의 關与를 排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비록 유엔에 依해서 韓國問題가 國內問題가 아니고 憲章2條7項의 該當事項이 아니라고 判決내려 지더라도 憲章 才7章33條는 유엔이 干涉이나 關与의 경우를 다음과 같이 制限하고 있으므로 論爭을 일으키는 것이 可能하다.

즉 紛爭 當事國의 兩者 協商이 完全히 失敗하여 問題解決을 위한 모든 平和的 手段이 可能하지 않을 경우에만 유엔이 干涉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韓半島의 兩 政府는 紛爭 當事國으로서 實際로 平和的 手段을 通하여 問題를 解決하려고 努力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유엔이 干涉한다면 憲章 자체를 違反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러한 干涉은 實質的으로 問題의 窮極的인 解決을 도와준다기 보다는 오히려 害치는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유엔은 적어도 現在의 南北의 平和的 協商이 完全히 失敗로 끝나는 날까지 介入을 保留할 것이다.

3) 中國의 경우와는 다르게 韓國問題는 南北韓 同時 유엔加入이나 어느 한쪽만의 加入의 問題이다.

이에 대해 韓國政府는 中國을 教訓삼아 對유엔 政策을 樹立할 수 있는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다음의 6가지가 重要하다. 즉,

- ① 北韓은 韓國戰에서 유엔에 依해 侵略者로 낙인이 찍혔다.
- ② 그러므로 北韓은 平和 愛護國이 아니다.
- ③ 유엔이 韓半島의 唯一 合法政府로 承認한 것은 大韓民國이라는 點
- ④ 여전히 北韓은 유엔을 國際機構로서의 權威와 權能을 否認하고 있다는 點
- ⑤ 北韓의 유엔 加入은 人種的 文化的으로 同一民族인 한 나

라의 同質性을 갈라놓는 結果를 가져온다는 점 .

- ⑥ 北韓을 独立的 政治体制로 分離하여 取扱한다는 것은 問題의 窮極적이고 根本적인 解決이 되지 않는다는 점으로서 南北 모두에게 원망을 살 것이라는 점

- 4) 유엔이 非會員國의 問題를 取扱하는 것은 憲章 第2條6項에 規定되어 있는데 이때 유엔이 干涉할 수 있는 경우는 第2條7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國際平和를 해친다고 판단되었을 때에 限하는데 이것 역시 유엔의 介入의 對象이 되지 않으며 만약 干涉의 경우는 잠재적 회피, 불복의 사태를 낳을 지도 모르며 심지어는 挑戰에 直面할 지도 모른다 .

따라서 現在의 韓半島의 狀況은 유엔이 干涉하지 않는 것이 가장 實在的인 結論이 나온다 .

- 5) 또한 유엔이 非會員國의 問題를 다룰 수 있는 가장 重要的 條件의 하나는 當事國이 유엔의 干涉을 承認할 것이냐의 問題가 前提條件이 되는데 즉 이것은 非會員國들이 먼저 유엔을 問題를 取扱할 수 있는 權威機構로 應答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 北韓은 過去에도 現在도 그러하듯이 未來에도 유엔에 對한 挑戰을 變化시키지 않을 것이 分明하며 이것은 곧 加入의 前提條件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된다 . 그리고 심지어는 北韓이 유엔을 承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敵對와 反感으로 유엔에 對한 態度에 一貫해온 것이다 .

이러한 問題들에 依해서 北韓은 유엔이라는 國際社会内에서 一員이 될 것을 스스로 拒否해온 것이다.

6) 北韓에게 가장 期待하는 바는 그의 實踐力을 期待하여야 되는데 여지껏의 北韓의 南韓에 對한 態度를 보면 武力에 依한 赤化야욕을 버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事實은 憲章精神에 違背될 뿐 아니라 國際標準에도 違反되는 것이다. 實로 北韓은 수많은 武裝공비의 南派와 非武裝地帶에서의 武力衝突等 여러件의 安定된 南韓 전북 음모를 試圖해 왔다.

이러한 北韓을 유엔에 加入시킨다는 것은 北韓政權이 大韓民國에 하고 있는 敵對行爲를 장려하는 것이 된다.

만약 北韓이 大韓民國의 反對에도 不拘하고 UN에 加入이 招請된다면 韓國의 國家利益, 特히 外交政策面에서의 長短점을 檢討해 봄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은 그 長點과 短點을 簡略히 記述한 것이다.

먼저 長點을 보면 :

- 1) 韓國은 南北韓 유엔 同時招請案에 對해서 北韓이 유엔을 承認할 것과 憲章義務를 이행할 것을 先行條件으로 하고 있으므로 北韓이 憲章을 履行하도록 할 수 있다.
- 2) 北韓이 유엔에 招請된다면 排除적 이면 北韓政府 내지는 北韓社会가 國際社会에 露出됨으로써 그들의 本性인 武力挑發性이나 侵略性이라는 本性에 對한 國際與論을 避할 수 없기

때문에 多少 緩和될 것이 予想된다.

- 3) 北韓을 유엔이라는 國際社會 속으로 끌어내어 國際社會의 規範이나 標準下에서 韓國問題의 解決을 促求하게 됨으로써 여지껏의 北韓이 一貫해 오던 獨단을 포기하도록 할 수 있다.
- 4) 従来の 受動的이고 防衛的이기만 한 立場에서 能動的이고 한 발 더 앞선 平和的 攻勢의 立場을 取하므로써 우리의 平和的 立場을 世界에 알리고 北韓의 獨斷을 撲倒할 수 있으며 우리 스스로도 自信을 가질 수 있다.
- 5) 北韓과 同時에 國際社會 내지 國際機構에 加入하여 이들 特殊機構의 테두리 속에서 活動하므로써 政治的 軍事的面은 아니라도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面에서의 交流를 통한 國家利益을 높일 수 있다.

(例, 어업, 영해, 통신문제 등)

以上이 비록 南北韓 同時招請이 되는 경우가 發生하더라도 韓國이 얻을 수 있는 利点인데 이에 反해서 短点은 다음과 같다.

- 1) 여지껏은 共產黨을 除外한 國際社會에서 韓國만이 有一하게 外交活動을 展開할 수 있었지만 北韓이 유엔에 同時加入하게 되면 그만큼 北韓이 地位向上과 아울러 外交的 進出이라는 面에서도 同等한 活動을 하게 된다.
- 2) 北韓의 유엔 同時加入은 現 國際政治下에서의 여러가지 要因에 依해서 될 것이 予想된다 하더라도 역시 根本的인 面에서의 韓國外交의 失敗로 看做될 것이며 이에 結付되어 國內

的으로는 政府에 對한 國民의 信任을 추락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3) 北韓加入 以前에서 北韓은 그들의 宣傳舞台가 制限되었지만 유엔이라는 國際社會가 全部 宣傳舞台가 될 수 있다는 것

4) 이와 結付시켜 北韓이 國際社會에서 南韓을 非難할 경우 이의 影響力은 例前보다 國內的 國際的으로 深刻해질 것이다.

5) 北韓이 유엔에서 南韓과 同等한 待遇를 받음으로 해서 그밖의 전문機構에서도 同等한 待遇를 받아 加入이 促進될 수 있다.

6) 以上の 것들로 因하여 將來 或시라도 武力衝突이 發生하면 6.25 당시와 같이 유엔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7) 이와 結付시켜 UNCURK의 解体가 可能하게 된다. 즉 UNCURK의 設立은 總會의 決意로 되었기 때문이다.

8) UNC의 解体에 關해서도 美國이 安保理에서 Veto 權을 行使하지 않게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것은 美國의 國內政治가 國際與論에 逆行하여 나아갈 지가 疑問視되기 때문이며 이 경우 法的, 政治的 諸問題가 發生한다. 즉 例를 들어 美軍의 주둔에 對한 法的 問題, 休戰會談問題, 그리고 이와 結付된 韓國의 安保問題가 그것이다.

以上으로 南北韓 同時 유엔招請의 長短點을 檢討했는데 여기서 分명한 것은 長點보다는 短點이 더 많았으며 이것은 韓國에게 不利한 條件들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假想的인 것이며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냥 輕視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現今 國際政治의 狀況은 그 變化의 迅速度를 予測할 수 없으며
또 北韓에게 有利한 傾向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2. 北韓의 유엔參與와 그에 對한 豫備對策

北韓이 유엔에 加入한後 予想되는 活動은 直接的인 課業이나 戰略의 觀点에서 뿐만아니라 広範圍한 影響力과 國家的 利益이라는 觀点 特히 全般的인 國家安保의 側面에서 檢討되어져야 할 것이다.

理論적으로 또는 広範圍한 側面에서 最近 世界史에서 國家目的이 몇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 1) Survival (國家의 生存)
- 2) Security (國家의 安保)
- 3) Independence (國家의 獨立)
- 4) Status (國家의 地位)
- 5) Influence (國家의 影響力)
- 6) Popularity (國家의 人氣)
- 7) Peace (國家의 平和)
- 8) Protection of Interests (國家利益의 保護)
- 9) Promoting Particular Ideology (國家의 思想의 增進)
- 10) Prosperity (國家의 繁榮)
- 11) Stable International Community (國際社會의 安定)

上記에서 言及된 國家目的을 達成하거나 이에 結付된 短期的 課業을 遂行하기 爲해서는 다음의 事項들이 必要하다.

- 1) 特定 同盟國과 友好를 계속 維持한다.
- 2) 特定 國家와의 關係改善

- 3) 他國家와의 關係에서 關係를 惡化시키거나 遂行되지 않도록 한다.
- 4) 同盟國의 利益을 增進시키거나 他國의 利益을 可能한限 充足시킨다.
- 5) 特定 國家群이나 統治集團과 友好關係維持
- 6) 他國의 어떤 일에 對해 友好的 反應을 보인다.

以上에서 言及된 것들은 簡略히 말해서 國家의 가장 根本的인 目的이 安保와 獨立이며 이들은 特別히 注目할 必要가 있다고 할 수 있다.

北韓政權이 유엔에서 어떤 活動을 하던 間에 그것은 모두 韓國의 政治的 理論的 國家利益과 直結시켜야 한다.

더구나 韓國의 國利面 가운데도 安保面에는 重大한 것이다. 最近 世界史는 國家가 그의 安保를 威脅받을 때 武力衝突이 發生하였음을 보여주는데 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한 國家의 名譽나 地位가 손상될 경우

이런 種類의 國家 名譽훼손은 理論的이며 心理的인 것이지만 國家로 하여금 戰爭이라는 最後手段에 호소하게 하는 要因이 된다.

- 2) 他國이 認識하는 못하는 間에 어느 國家가 自己 所有의 權利를 侵害당했다고 믿는 경우

國境線上에서 發生한 수많은 最近 戰爭들은 어느 國家가 他國에 依해서 權限을 侵害당했다고 믿는 경우이며 이 경우는

國際與論이 어떻든간에 武力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3) 또한 強熱하게 바라던 어느 國家의 目的達成이 失敗로 끝나고 이에 대한 不滿이 있는 경우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진 中東戰爭은 이것에 대한 例가 된다.

4) 國家安保에 對한 直接, 間接의 威脅이 있는 경우

이 경우의 戰爭은 어떤 면에서는 至極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戰爭發生의 要因으로서 或은 國家安全을 威脅하는 要素로서 上記 네가지 狀況을 살펴볼 때 北韓이 유엔에 參與한다는 것은 韓國政府의 地位와 名譽에 確實한 손상이 되는 것이다.

그 밖에는 北韓이 유엔에 들어간다는 事實이 別로 韓國에 손해 되는 것이 없다.

즉 國家權利, 國家目的, 國家安保의 면에서 韓國에 害가 되는 면이 別로 없는 것 같다.

北韓의 地位를 過大評價하는 경향이 있음은 認定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적어도 가까운 將來에 國家利益(韓國側)에 實質적으로 影響을 미칠 수는 없다.

北韓이 유엔에 加入하여 活動을 벌인다면 다음의 경우에 限해서 重大한 問題가 發生할 것이다. 즉,

1) 大韓民國政府의 根本적이고 最終적인 權力에 威脅이 될 때

2) 軍事的 策動이나 다른 敵對行爲를 通해서 國家安保에 威脅이

될 때

- 3) 게릴라 行為나 海岸線 或은 空中侵透를 통한 敵對行為나 挑
發行為를 增加시킬 경우
- 4) 韓國의 正常화된 貿易關係를 防害하거나 世界로 向하는 海岸
線이나 空中路線을 侵害할 경우

그러나 이러한 것들의 實際적인 威脅이 있지 않는限 北韓의 유엔 參與에 對해 威脅을 느끼거나 하는 생각은 시기상조인것 같다.

만약 北韓의 유엔 參與가 韓國의 關心거리가 된다면 北韓이 國際社會에서 어떤 이미지를 심느냐는 것이다.

北韓이 國際社會에서 韓國과 거의 같은 水準을 지닌 政治集團으로 認定되고 있는限 韓國에 대한 가장 큰 威脅은 韓國의 國內問題가 아니고 韓國의 國際社會에서의 外交政策이 問題이다.

實로 北韓의 現在 予想되는 目標은 韓國과 對等한 國際社會에서의 地位인 것이다. 이 點에 關해서 韓國은 이번에 北韓의 유엔 參與가 가져올 衝擊을 警戒하며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一般的으로 이에 對한 對策은 韓國이 美國이나 그밖의 同盟國들에게 依存만 하는 傳統的 封鎖政策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實際적인 國家利益의 必要性和 國家安保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韓國은 유엔史의 教訓을 銘心해야 할 것이며 最近 國際政治의 教訓을 알아두어야만 할 것이다.

이와 關聯지어 韓國이 認識해야 할 것은 韓國의 유엔政策이 지니는 強點과 弱點이다.

먼저 長点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 韓國은 北韓에 比해서 外交關係에 對한 經驗이 훨씬 더 豐富하다는 點
- 2) 韓國은 北韓보다 더 많이 訓練되고 經驗있는 外交官을 갖고 있다는 點
- 3) 韓國은 北韓에 比해 오랜동안 國際外交에 參與한 經驗을 가지고 있다는 點
- 4) 美國과 日本으로 부터 支援을 받고 있다는 點
- 5) 韓國은 北韓보다 經濟的 能力이 있으며 國民生活도 훨씬 높은 水準에 있다는 點
- 6) 全般的인 自由教育制度와 이 制度下에서 教育을 받은 많은 人口를 所有하고 있다는 點
- 7) 韓國의 國民들은 自由의 기쁨을 享有하고 있다는 點

이에 反해서 韓國이 지니는 弱點은 다음과 같다. 즉,

- 1) 權力體에 對한 集中力과 統一性이 欠如되어 있다.
 - 2) 思想이 北韓처럼 統一되어 있지 않다.
 - 3) 國民의 感情에 逆行해서라도 國家目的을 遂行할 支配力이 없다
 - 4) 共産陣營으로 부터 北韓이 끊임없이 支援을 받고 있다는 點
- 以上에서 言及된 것들과 關聯지어 볼때 韓國의 外交政策은 다음 몇가지가 調和되어져야 할 것이다. 즉,

- 1) 日本의 경우처럼 政治와 經濟가 分離, 즉 政經分離의 原則을 使用해야 할 것

2) 中共이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 行한 外交政策을 본 받아야 할 것.

이 두가지로 볼때 韓国外交政策은 中共과 日本에게서 본 받을 점이 있는것 같으며 이들과 關聯시켜 未來의 韓국의 外交政策에 對해서 勸告되어질 點은 무엇보다도 韓國은 北韓과 함께 유엔에 加入하게 될 것이 不可避하다는 事實을 認定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美國과 日本이 北韓을 承認하게 되리라는 사태에 直面하게 될 것이며 同時에 韓國이 유엔에서 韓국의 國利에 相當하도록 政策을 遂行해 나가야 한다는 事實에 對해 미리 對策을 세워야 한다.

韓國은 北韓이 유엔에 加入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유엔에 對한 계획을 拋棄해서는 안된다. 언제인가는 北韓도 유엔에서 活動을 하게 될 것이며 여기에 基盤을 두고 韓國은 유엔에서 다음과 같은 點에 重點을 두고 政策을 遂行해야 한다. 즉,

- 1) 可能한 期間까지 北韓의 유엔加入을 지연시킬 것
- 2) 한편 韓國은 유엔에서 各 主要國家들에 對해 長期的 計劃을 세워야 한다.

北韓이 유엔에 加入하는 것을 지연시키기 爲해서 韓國이 使用할 수 있는 政策들은 다음과 같다. 즉,

- 1) 本 論文에서 列擧한 北韓의 유엔 加入에 反對하는 事項들을 모두 利用할 것
- 2) 可能한限 많은 國際機構, 國家的, 私的 團體에 加入할 것.

유엔體制下의 專門機構에 對해 韓國은 各별한 주의를 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韓國은 유럽공동시장과 유대를 強化할 것이며 美洲機構(OAS) 아프리카 統一機構(OAU) 또한 다른 地域機構와 關係를 強化시켜야 한다. 더우기 韓國은 여러 經濟的 社會的 技術的 國際協力機構의 會員이 되도록 努力해야 한다.

可能한限 많은 國際機構에 加入한다는 것은 實際적으로 國際社會에서의 韓國의 이미지와 地位를 強化시키는 效果를 지닌다. 그리고 그렇게 하므로써 北韓보다 더 높은 地位를 占할 수 있는 것이다.

3) 앞서도 말했지만 中共이 라틴 아메리카와 맺은 關係에서 본받아 韓國은 可能한限 많은 나라와 親善外交關係를 맺어야 한다. 그렇게 하므로써 韓國이 外交關係를 맺고 있는 나라와 맺지 않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는 根本的인 差異가 생기는 것이다. 이와 같이 韓國이 여러나라들과 外交關係를 갖는 한편 韓國에 보다 많은 政府首腦級과 高級官吏들을 招請하고 이들에게 世界에서의 韓國의 政策과 目標를 說明하고 설득시켜 지지와 협조를 求할 수 있는 것이다.

韓國이 外交關係를 맺고 있지 않는 나라들에 關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政策이 有用할 것 같다. 즉,

a) 비록 外交關係는 맺고 있지 않지만 可能한限 많은 文化, 教育, 或은 非政治的인 親善使節을 파견하거나 反對로 초청

하여 相互 理解를 增進시켜야 한다. 特히 教育系의 指導者 言論 編輯人들, 그리고 다른 言論界의 指導者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b) 앞에서 言及한 段階를 注意 깊게 檢討한 後에 窮極적으로 兩國家사이의 承認을 交換할 수도 있는 것이다.

以前에 言及한 바와 같이 北韓의 유엔加入을 시키는 한편 다른 方面으로는 可能한 限度內에서 많은 國際機構에 參與하며 韓國을 承認하지 않는 나라들과의 關係는 中國의 경우에서 얻은 教訓을 거울삼아 나가므로써 韓國은 未來의 國際關係를 계획하며 準備해야 할 것이다.

韓國外交政策의 全般的인 面들이 다음과 같이 集約된다.

1) 韓國을 承認하는 國家의 數를 可能한限 증가시키거나 또는 저어도 將來에 北韓을 承認할 可能性이 있는 國家들의 지지를 韓國便으로 돌리며 數의 優勢를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

이 數의 優勢는 다음 몇가지의 方法을 통해서 達成될 수 있다.

a) 現在 進行中인 南北赤十字會談을 통해서 南과 北의 兩政府를 모두 承認하지 않는 限 外國으로 부터 承認을 받지 말자고 北韓과 協定을 締結한다.

b) 外國政府로 부터 將來의 어떠한 承認도 받지 안겠다고 南과 北이 다짐을 받는다.

c) 或은 共產陣營의 國家들이 韓國을 承認하지 않는다면 西方 陣營의 國家들도 北韓을 承認하지 않도록 美國에 影響力을 總용 시킨다.

2) 韓半島에 直接으로 理解關係를 가진 四強 즉 美國, 蘇聯, 日本, 中共의 重要한 役割을 認識하며 나아가서는 이들과 個別的으로 接近한다.

3) 蘇聯에 關해서는 韓國은 政經分離原則을 使用하는것이 좋을것 같다. 이와 같이 蘇聯과 非公式的 關係를 通해서 韓國은 韓蘇의 隣接海에서의 난파선의 수색 및 구조에 友好的 態度를 보이거나 魚業問題에 相互協調를 보이며 隣接海底에서의 광물 자원의 개발에 協調를 보이므로써 蘇聯과 첫단계의 接觸이 可能해 지는 것이다.

韓國은 또한 相互友好의 바탕위에 旅行을 禁止시켰던 것을 解除하는 友好를 보여야 하며 可能한 限 各種 國際會議에서 誠實性을 보여야 하며 또한 可能한 範圍內에서의 相互貿易 關係를 締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非政治的인 것이지만 結局에 가서는 蘇聯과 北韓의 關係를 分離시킬 수도 있는 것 들이다.

4) 中共에 關해서는 韓國은 무엇보다 먼저 적절한 名稱의 使用이 시급하다. 그리고 上記 蘇聯과의 關係에서 言及한 事項들과 같은 面들을 挾하면 될 것이다. 또한 中共과는 特別히 大陸 問題와 領海問題, 그리고 魚業問題들이 있는데 이들의

解決에 있어 平和的 手段으로 協調하는 友意를 보이는 것이
중을 것 같다.

더 나아가서는 中共에 文化使節團의 交換도 모색할 수 있
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韓國은 亞細亞에서의 平和에 對한 前
提條件으로 地理的 地域的 調和를 이루어야 한다.

- 5) 日本에 對하여는 韓國은 可能한限 많은 貿易과 旅行을 장려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投資에 對해서는 注意를 要한다.
즉 韓國에서 日本의 投資를 늘이는 것은 日本에 對한 經濟
依存이란 面에서 뿐아니라 政治的 危險性도 內在해 있는 것
이다.

同時에 韓國은 日本과 될수 있는限 많은 條約과 協定을
맺어야 한다.

이것은 日本과 北韓의 關係를 단절시키려는 努力이 된다.
韓國은 日本과의 關係에서 誠實性을 期待해야 하며 日本이
北韓에 눈을 돌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 6) 美國에 對해서는 韓國은 1954年의 韓美防衛條約에만 滿足해
서는 안되며 이의 再調整을 추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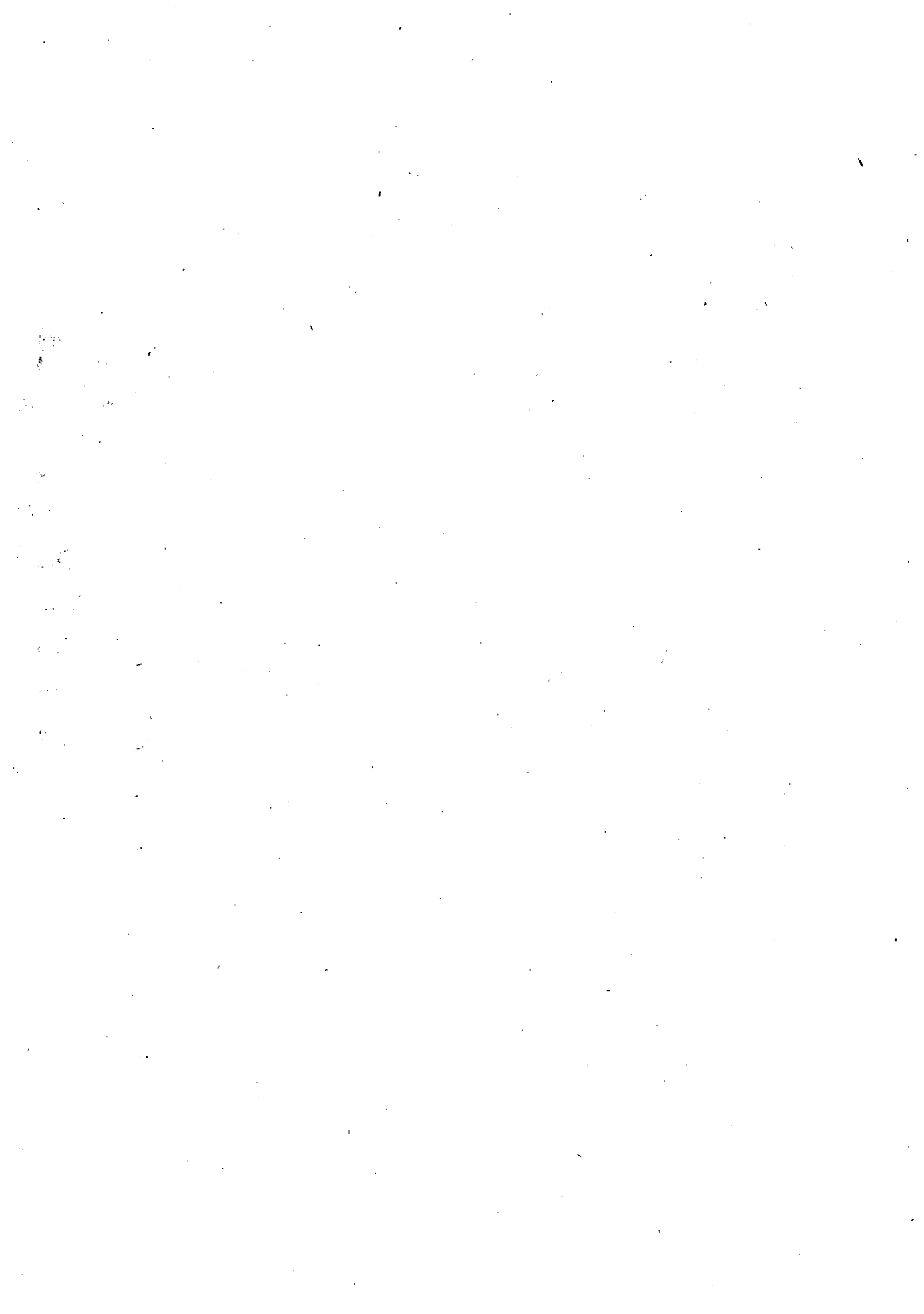
이 再調整된 條約은 美國의 韓國에서의 계속된 軍대 주둔을
내포해야 한다. 最小限 美軍의 象徴的 주둔은 保障받아야
한다.

이 美軍基地는 陸.海.空의 三軍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또 韓國은 韓美間의 經濟協調를 增進시키고 美國의 投資와

公約을 增加시키도록 努力해야 한다.

이러한 努力으로는 私的投資도 장려 되어져야 한다.

各種의 會議과 세미나를 通해서 韓國은 可能한 限 많은 美國의 與論指導者들을 招請하는 方法도 可能하다. 美國의 議會指導者들을 定期的으로 韓國에 招請하여 그들이 韓國에 對한 理解를 增進시키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才 5 章 同時招請問題와 北南의 「유엔」

代表府 設置問題

1. 同時招請 以後의 予想되는 北韓의 活動과 그에 對한 對備策
2. 北韓의 「유엔」代表府 設置問題

1. The first part of the documen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of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MEMBERS OF THE COMMITTEE

The committee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members:

- Mr. J. H. Smith, Chairman
- Mr. A. B. Jones, Secretary
- Mr. C. D. Brown, Treasurer
- Mr. E. F. Green, Member
- Mr. G. H. White, Member
- Mr. I. J. Black, Member
- Mr. K. L. Gray, Member
- Mr. M. N. Blue, Member
- Mr. O. P. Red, Member
- Mr. Q. R. Purple, Member
- Mr. S. T. Yellow, Member
- Mr. U. V. Orange, Member
- Mr. W. X. Green, Member
- Mr. Y. Z. Blue, Member

1912

1. 同時招請 以後의 豫想되는 北韓의 活動과 그에 對한 對備策

万若 北韓이 유엔加入을 招請받는 경우를 假定할 수 있다면 北韓의 最初의 目標은 다음의 것들이라고 予測할 수있다. 즉

- 1) 모든 外部干渉이 韓半島에서 발생의 要因이 되어왔다고 주장하며 兩韓內에 있는 모든 外部의 勢力을 減小시키려고 試圖할 것이 分明하다.
- 2) 가장 重要한 事項은 아니지만 駐韓美軍의 撤収를 주장할 것이다. 이 주장은 언커크와 유엔군의 解体나 폐지의 決議案을 通過시키려는 것과 併行될 것이다.
- 3) 美國에게 侵略者라고 或은 韓半島에서의 계속된 不和의 根源이 모두 美國에게 있다고 美國을 비난할 것이며 따라서 駐韓美軍의 完全撤収를 주장하게 될 것이다.

大韓民國에 對해서는 다음과 같은 問題들이 發生할 可能性이 있다. 즉

- 1) UNC 와 UNCURK 의 解体
- 2) 駐韓美軍의 撤収

이 두 事項에 關해서는 우리가 銘心할 사항이 다음 몇가지 이다. 즉

- 1) UNCURK 는 유엔總會의 決議에 依해 세워진 것이며 UNC 는 安保理에 依해 設立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들에 대한 폐지는 各記 두 檢橋의 決議에 依해서 可能한 것이다.

- 2) 万若 總會가 언커크의 解体案을 通過시킨다면 그것은 韓國에서 유엔의 權威에 依해 成立된 모든 機關이나 活動이 즉각적으로 끝내져야 한다는 것을 意味하게 된다.
- 3) 그러나 만약 安保理가 UNC 撤收案을 通過시킨다면 이 事實은 重大한 局面을 야기시킨다. 즉 休戰協定の 法的 地位와 現在 進行中인 판문점의 會談의 問題가 그것이다.
- 4) UNC의 撤收案은 「重要問題」이므로 安保理의 拒否權이 適用될 것이다.
- 5) 大韓民國은 만약 UNC 問題가 安保理에 上程된다면 事前に 美國과 拒否權 使用에 對한 問題를 協議해야 될 것이다.
- 6) 만약 美國이 拒否權 使用을 拒絶한다면 韓國은 未來의 休戰會談問題와 이에 關聯된 問題들에 對해 美國과 直接 協議해야 할 것이다.
- 7) 만약 어떤 理由에서든 UNC가 廢止된다면 休戰協定の 法的 地位는 基盤을 잃고 말 것이며 韓國은 이에 對한 代案을 準備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問題들에 關聯지어 가장 重要한 것은 판문점 會談의 將來인 것이다.

즉 韓國은 休戰協定の 調印國이 아니며 이로 因해 韓國은 休戰協定에 對해 아무런 法的 地位도 갖지 못하고 있다.

結局 그때에는 法的으로 休戰協定 締結以前의 狀態로 環元 즉 戰

争狀態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注意할 것은 戰爭이 一個國 或은 二個國 以上の 國家群들의 挑戰行爲이어야 한다는 事實이며 만약 6.25가 國家間의 行爲가 아니고 韓國內의 政治集團間의 싸움이였다면 거기에는 戰爭狀態가 存在할 수 없으며 「內亂」만이 있었을 뿐이며 따라서 이것은 一國의 國內管割의 問題인 것이다.

上記 言及된 論規들은 實際的이거나 꼭 發生可能한 것은 아니다. 實際面에서는 法的인 것에 反對되는 事態들이 다음에 關聯지어 나타날 것이다. 즉

1) 北韓과 休戰協商 및 이에 關聯된 問題에 關해서 討議하기 爲해 UNC와 韓國의 事務代行.

2) 中立國 監視委員團의 철퇴내지 撤収

여기서는 UNC 대신 韓國이 代役하는 問題가 法的 政治的 重要性을 지닌다. 여러가지 代案들 가운데 注意를 要하는 側面은 다음 몇가지 들이다. 즉

1) UNC 철퇴문제가 提起될 때 安保理의 決議의 一部로써 UNC에 依해 지금까지 進行되어온 協商은 韓國에 依해 代役될 것인가 或은

2) 세로이 兩과 北사이에 休戰協定을 締結하던가 하는 問題가 남는다.

이에 關해서 言及한다면 北韓이 노리는 가장 큰 目標인 韓國에서 美軍이 撤収하는 것을 爲해 다음에 明示하는 두가지 面으로 努力할 것이 予想된다. 즉

- 1) 韓國에서 美軍이 駐在하는 法的 根拠를 除去함으로써 美軍撤收
를 意圖하던지
- 2) 유엔 總會의 決意를 가지고 韓國에서 모든 外部勢力을 撤收를
意圖할 것이다.

이 두가지 方法은 모두 美國을 굴복시키고 韓國에서 美軍의 完
全撤收를 達成하려는 것이다.

또한 上記 두가지 가운데 어느 한가지나 或은 두가지 모두가
유엔에서 採択된다면 그것은 美國에서 충격을 주며 또한 美軍의
韓國주둔에도 影響이 미칠 것이다.

美國이 UNC 철페안이 上程됐을 경우 이를 沮止하기 위해 使用
하는 Veto에 關해서는 이 案이 提起되었을 때 얼마나 빨리 Vto
를 行使할 것인가에 問題가 있다. 그리고 美國이 거기서 Veto를
行使하리라는 것이 明白하다고 해도 韓國이 이것만을 믿어서는 안
되는데 그 理由는 즉

- 1) 美國의 國內政治는 予測할 수 없을 정도로 變化되고 있으며
- 2) 만약 유엔 總會가 UNCURK의 폐지를 決議한다면 이것은 美
軍駐屯에 對해서 美國議會를 자극할 것이 틀림없다.
- 3) 또한 美國의 Veto 行使는 問題를 지연시키는 效果만이 있을
뿐이며 撤收에 對한 根本的 解決은 유엔內의 共濟陣營에 依
해 계속 提起될 터이므로 어렵다는 것
- 4) 여기에 添付시켜 韓國은 이 問題의 根本的 解決이 必要하다.
駐韓 美軍의 駐屯의 계속을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가 重要하다.

- 1) 駐韓美軍의 駐屯은 實質的으로 戰鬪的 機能이 없는 象徴的 存在에 不過하며 이 象徴的 存在의 意味하는 바는 만약의 事態發生時에 美國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하나마 心理的인 위로가 된다.
- 2) 韓·美防衛條約은 韓國內에서 未來에 事態發生時 美國의 援助를 確實히 保障하지 못한 것이므로 美軍의 韓國駐屯만이 이를 더한層 確實히 해주는 것이다.
- 3) 적어도 美國議會에서는 美軍이 韓國에 계속 駐屯하므로써 韓國에 軍事的 위험이 常存해 있다는 事實을 認識하게 되며 이것은 軍事的 援助計劃에 대한 重大한 側面이 될 것이다.
- 4) 美軍의 韓國駐屯은 北韓側에서 보면 韓國에 어떤 攻擧를 하고 싶어도 韓美 共同反擧를 받게될 것이 分明하므로 挑發을 沮止하는 것이 되며 또한 北韓과 그 同盟國들에게 美國은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韓國을 도울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 5) 또한 美軍의 韓國駐屯의 利點은 各種 公·私投資를 保障하는 手段이 되기도 한다. 즉, 美軍이 駐屯하므로써 投資家들은 安心하고 韓國에 投資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만약 美軍이 없을 경우는 사정 이 달라진다.

上記 例들은 韓國에서 美軍의 撤収問題에 關聯된 몇 가지 側面에 不過하다.

여기서 明白한 것은 駐韓 美軍의 계속 駐屯은 그것이 비록 “象徴的 주둔”에 不過하더라도 政治的 軍事的 經濟的 그리고 다른 여러면에서의 重要性을 가지는 것이다.

만약 유엔군의 撤収가 確實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韓國은 美軍의 계속적 駐屯을 保障하기 爲해서 美國과 公式的 協定을 締結하는 질반이 有一한 代案이 된다고 하겠다.

이점에 關해서 같은 理由로 美國이 유엔군의 撤収問題에 對한 Veto 權을 使用하는데에 그다지 熱을 올리지 않을수도 있는데 이것은 美國이 韓國에서 軍隊駐屯을 保障하는 1954年의 韓美防衛條約을 再整理하는데 別로 能動的이 아니었던 것으로도 한번 가상해 볼직 하다.

만약 美國이 유엔군 철퇴 問題에 關해 Veto 使用이 確實하지 않다면 또한 만약 美國政府가 韓美防衛條約의 改定을 韓國이 바라는 바대로 同意하지 않는다면 行政協定을 통한 또하나의 手段이 代案으로 세워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學術的이고 法的인 觀點에서의 重要性이 言及되어져야 한다.

美國의 憲法下에서는 條約과 行政協定 사이에 根本的 差異가 있

다. 그러나 美國에 依해서 承認되고 遂行되었던 國際法下에서는 이 두개 사이에 아무런 差異도 없는 것이다.

이 두개는 모두 國家相互間의 關係를 樹立하거나 變更시키거나 단절하는 手段이 된다.

이 두가지 즉 條約과 行政協定이 美國 憲法下에서 지니는 差異點은 아래와 같다. 즉

1) 條約은 國家의 見地에서 볼때 가장 重要한 問題를 取扱하는데 反해서 行政協定은 第二次的으로 重要性을 지니는 問題들 즉 行政的이며 秘密적이고 一時的 問題들이 그 例이다.

2) 條約은 美國 上院으로부터 多數의 지지와 同意를 얻어야 되는데 反하여 行政協定은 美議회의 同意가 없어도 成立된다.

그러므로 韓國이 條約보다도 行政協定을 通하여 必要한 協定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理由인즉 다음의 民主黨에서 大統領으로 들어서는 사람은 現在의 닉슨政府보다는 훨씬 더 共產主義에 接近하는 自由主義的 傾向을 내세울 것이며 그리고 現副統領 Spiro Agnew를 除外한다면 共和黨 사람들 가운데도 韓國에 友好的인 사람들이 많다고는 確信할 수 없다.

韓國은 韓美防衛條約 第二條에 依해 行政協定을 締結하여 駐韓美

군의 계속적 駐屯의 必要를 達成할 수 있다.

여기서 美國이 各 國家와 맺은 條約들 즉 NATO, OAS, ANZUS, 美-필리핀防衛條約 韓美防衛條約에 關한 比較研究는 延世大學에서 1973 年에 發刊한 “東西研究”의 PP77~100을 參照할것

2. 北韓의 UN代表府 設置問題

美國과 UN 사이에 關係에서 法的인 條約이 없으므로 兩側의 關係는 다음의 세가지 合意에 依해서 成立한다. 즉.

- 1) 1947年 6月 26日에 調印된 美國과 UN間의 HEADQUARTERS AGREEMENT.
- 2) 1946年 UN總會에서 採択된 CONVENTION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UNITED NATIONS.
- 3) 憲章 第105條

이와 對峙되는 다른 協定이 없으므로 UN代表府의 設置는 上記 普及된 세가지 事項의 法的 基盤에 依해서 成立한다.

그러므로 北韓의 UN代表府 設置問題를 檢討하기 前에 上記 세가지 項目을 簡略히 서술하고자 한다.

Head Quarters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Nations Agreement는 普通 Head Quarters Agreement로 簡單히 불리지며 이것은 UN本部가 UN의 한 會員國인 美國의 領土內에 位置하기 때문에 由來한 것이다.

UN本部는 John D. Rockefeller, Jr.가 8,500,000 弗에 該當하는 뉴욕市の 땅 17acre를 UN에 寄贈한 데에 세워졌다.

이로 因해 治安, 出入問題, 消防問題, 税金, 通信問題를 비롯한 法的 實際的 問題가 發生하였다.

UN事務總長과 美國間의 協商의 結果로 Headquarters Agreement between United States and United Nations라는 最終 協定이

締結되었으며 이것은 1947年 10月 31日 UN總會에서承認되었다.

本來 이協定은 UN區域의不可侵과 어떤美國法도 UN法과상치될 때는 이地域에서適用될 수 없음을保障하였다.

이런 면에서 이協定은美國內의外國外交使節들의地位를取扱하는原則과類似하다.

이協定에依해서美國은 UN本部에 드나드는公式代表들이나 UN에公務로參席하는代表들에對해何等의制限을加할 수 없게되어 있다. 즉 UN의代表들은美國에派遣된 다른外交使節들과對等한特權과免除를所有하는 것이다.

이와같이美國이 UN에出入하기 爲해美國에 오는사람들을 아무制限도 할 수 없음과 UN代表들이나公務로 UN을出入하는사람들에對해 아무런制限도 할 수 없음은注目거리이다. 그러나美國은 이들을除外한그밖의 다른사람들의出入을制限할 수 있음은 다른나라의境遇와 마찬가지로이다.

THE CONVENTION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UNITED NATIONS은 1946년에採択되었으며 UN代表들과幹部들의國際的地位뿐 아니라機構의法的性格을規定하고 있다.

이協約下에서 모든美國財産과項目들은法的으로免稅되며 모든義務事項이免除되고輸入品目的禁止事項도制限을받지 않는다.

UN의 모든機構代表들은逮捕와抑留를當하지 않으며私的인집이라도差押되지 않는다.

이들의文書와書類는侵害를받지 아니하며通信의使用도自由이며 수행원에依해서自由롭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一般的으로 UN의 特權과 免除를 規定한 이 協約은 外交使節들이 가지는 것과 같은 特權을 保障하는 것이다.

ARTICLE 105 OF THE CHARTER.

이에 앞서 憲章 104 條를 먼저 살펴보면: 「UN은 機能遂行과 目標達成을 爲해서 必要한 法的 能力을 各 會員國의 領域內에서 享有한다」

憲章 제 105 조의 規定은 다음과 같다.

즉: 「UN 各 會員國의 代表와 機關의 任員들은 設備과 關聯된 功能을 獨立的으로 遂行하기 爲해서 必要한 特權과 免除를 享有한다.」

또한 UN은 다음의 경우에서 法人으로 性格을 갖는다. 즉

- 1) 契 約
- 2) 不 動產의 獲得과 処理
- 3) 法的 節次를 構成하고 條約締結

上記 言及한 세가지는 美國과 UN의 關係에서 맺어진 것이다. 以上에서 본바와 같이 非會員이 UN에 代表府를 設置하는 事項에 對해서는 아무런 規定이 없는 것이다.

또한 美國도 非會員國이 自己 領土內에서 代表府를 設置하는데 關해 어떤 義務規定이 없다. UN의 代表들이나 或은 公務遂行員들을 除外하고는 美國이 實際로 이민법에 依해 出入國을 統制하는 것이다.

여기서 代表들을 明確히 할 必要가 있는데 代表團, 顧問團, 技術者 代表들의 秘畧까지 總網羅한다.

美國이 UN의 代表와 公務로 出入하는 사람들 外에는 一方的으로 出入國을 制限할 수 있기 때문에 "公務遂行을 爲한 사람들" 이란 用語에는 特別한 重要性이 內包된다.

의냐하면 上記 言及된 바에 依하면 非會員의 代表團은 여기서 規定된 代表가 아니기 때문이다.

過去 美國이 非會員國들의 代表에 關해서는 "公務를 遂行하는 사람들" 로 取扱하지 않았다.

그것은 美國이 UN의 非會員國 代表들의 代表府 設置를 출판 거절해 온것으로도 나타난다.

實際로는 非會員國이면서도 代表府를 設置할 수 있었던 나라들은 美國과 公式的 外交關係를 맺고 있는 나라들 이었다. 즉 韓國을 비롯하여 西獨, 교황령, 월남, 모로코가 그 例이다.

UN의 非會員國들 가운데 一部는 代表府를 設置하지 않거나 못하는데 反해서 몇나라들이 設置할 수 있는 理論的 根拠는 "Assimilation Theory" 에 依해서이다.

이 理論에 依하면 代表府는 한나라의 外交使節의 一部라는 말이 成立하며 따라서 代表府의 設置는 外交的 特權과 免除에 依해서 이다.

이렇게 非會員國이 美國과 外交關係를 맺고 있는 경우에 UN에 代表府를 設置할 수 있는 反面 美國에 承認되지 않는 모든 나라들은 美國과 外交關係가 없으므로 UN 代表府 設置가 어려운 것이다.

이와같은 理由로 因해서 非會員國들은 UN에 代表府를 設置하고

싶어도 設置할 수가 없으며 여기에 대해 例外가 있다면 東獨代表
府의 경우이다.

알려진 바에 依하면 이 境過는 美國이 東獨의 代表府 設置에
同意할 義務가 있어서 라기 보다는 國際政治의 實際的인 面이 더
크게 作用한 것 같다. 즉 다식 말에서 美國이 國際法下에서의 法
的 義務때문이 아니고 國際使節(International Comity)에 依해
서 인것 같다. 즉, 親善 友好的 措置이지 義務에 依한 것이 아
니라는 것이다.

萬若 北韓이 UN에 代表府를 設置하려 한다면 이 경우 역시
國際法的인 問題보다는 國際禮節의 問題가 發生할 것이다.

